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Section III_ **다문화분과 세미나**

| 일시 |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13:10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다문화분과

인/사/말



김 삼 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 차

기조강연 	9
“한국의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와 선교전략” _ 김범수 교수(한국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발 표 1 	33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적응과 교회의 역할” _ 강기정 교수(백석대학교)	
발 표 2 	47
“다문화와 사회적 사업-나섬공동체의 사역과 비전” _ 유해근 목사(나섬공동체 몽골학교)	
발 표 3 	59
“다문화사역과 해외선교 모델(남부전원교회의 다문화사역을 중심으로)” _ 남부전원교회 선교위원회	
발 표 3 	76
“다문화 사회의 국내 이주사례” _ 김영임 원장(코시안의 집)	
종합토론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다문화분과 -

1. 일 시 : 2010. 10. 14(목) 오전 10:00 ~ 오후 13:00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제1성전 출입구)
3. 등 록 비 : 무료
4. 행사안내 :
 - 1) 전화 및 팩스(Tel. 02-747-1225 학술팀 / Fax. 02-764-1225)
 - 2) E-mail(expo2010_head@hotmail.com)
5. 행사일정

시 간	순 서	내 용
09:45 ~10:00	경배와 찬양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국 찬양팀
10:00 ~10:30	개회예배	인도_ 하여라 목사(엘림외국인지원센터 대표) 기도_ 이현성 목사(세상의빛 이주민센터 대표) 설교_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_ 예정)(설교10:05~10:25입니다) 축도_ 설교자
10:30 ~10:50	축하공연	“만들린 성가 연주” _ 어용수령(몽골 / 나섬공동체)
좌장 : 박천응 목사(안산이주민센터 대표)		
10:50 ~11:20	학술발표 I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적응과 교회의 역할” _ 강기정 교수(백석대학교)
11:20 ~11:50	학술발표 II	“한국의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와 선교전략” _ 김범수 교수(한국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11:50 ~12:10	사례발표1	“다문화와 사회적 기업 - 나섬공동체의 사역과 비전” _ 유해근 목사(나섬공동체 대표)
12:10 ~12:30	사례발표2	“이민자 선교복지와 해외선교 모델”- 남부전원교회 다문화사역을 중심으로 - _ 남부전원교회 선교위원회
12:30 ~12:50	사례발표3	“다문화사회의 국내 이주사례” _ 김영임 원장(코시안의집)
12:50 ~13:10	종합토론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한국의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와 선교전략

한국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전 평택대 김 범 수 교수

| 목 차 |

1. 머리말

2.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에 관한 유래 및 정의

- 1) 영국 토인비 홀의 교훈
- 2)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의

3. 다문화영역에서 기독교의 주요 활동사역

- 1) 외국인근로자지원 사역
- 2) 국경없는마을 운동 사역
- 3) 이주노동자 심방사역
- 4) 외국인노동자 사망자의 유골함 사역
- 5) 재한몽골학교 사역
- 6) 이주민의 쉼터사역
- 7) 다문화대안학교 사역
- 8) 결혼이주여성 리더육성 사역

4. 다문화영역에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주요활동사항

- 1) 정부의 주요활동사항
- 2) 민간의 주요활동사항

5.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의 선교전략

6. 맺음말

1. 머리말

본 글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탈북자 등)들에게 효율적인 선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난 10여년간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나 교재 논문들은 수십편이 발표되었다. 그중에서도 기독교 다문화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문헌의 참조가 요망된다. 먼저 박천웅은 2005년도에 “이주민과 기독교사회복지” 논문, 2006년도에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단행본), 2007년도에 “현 단계 이주민 복지의 실태와 과제” 논문(미간행),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해성은 2005년도에 『구약성서의 외국인 이주자 개념과 한국 이주자 선교에 관한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유해근은 2006년도에 『노마드에게서 배우는 한국교회의 미래』 (단행본), 2008년도에 『노마드 예수』 (단행본)를 수필집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주민의 기독교 사회복지와 성서적 신학적 근거, 세계화와 이주민 복지권, 이주민의 복지현실, 성서에 나타난 이주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디아스포라, 노마드와 관련된 내용 들은 앞에서 제시한 자료가 참조 요망된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신학대학원 내 박사학위논문으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논문은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앞의 기독교 다문화관련 논문이나 단행본을 연구한 박천웅, 김해성, 유해근은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기독교 다문화사역 영역에서 헌신봉사해 온 산 증인이며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다문화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는 앞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람데 본 글에서는 중복 분석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또한 3장에서 다문화영역에서 기독교의 주요 활동 사역 사례는 필자가 다문화사회 십계명(김범수, 2010)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담당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기록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문화사역에 참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2.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에 관한 유래 및 정의

1) 영국 토인비 홀의 교훈

(1) 토인비 홀의 설립배경

한국의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를 논하는데 있어 1884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토인비 홀의 설립배경과 과정속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토인비 홀은 이스트 런던 대학 인보관(The Universities Settlement in East London)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1884년 사무엘 바네트(Samuel Barnett)목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 또한 산업화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가난한 농민들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빈민의 문제, 즉 실업, 범죄, 질병, 비위생적인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67년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에드워드 데니슨 목사는 교육 및 문화적 관점에서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며 상담을 했다. 또한 1873년에 사무엘 바네트(Samuel Barnett)목사와 그의 아내 헨리타(Henrietta)에 의해 본격적으로 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실천되었다. 사무엘 바네트목사 부부는 빈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 참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바네트목사는 학생들에게 연설을 통하여 대도시에 몰려드는 외국인노동자와 영국의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영국의 부유층은 영국에서만 부를 누리며 일반 대중은 지식이나 희망이나 건강마저도 박탈당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연설에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은 양심의 깨달음을 받고 빈민들을 위한 헌신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많은 교수와 학생들은 빈민지역에 거주(Settle)하면서 빈민의 도덕적 감화와 교육활동 등 사회개량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바네트는 1883년 빈민들을 위해 봉사하다 30세에 과로로 사망한 아놀드 토인비(Anold Toynbee)를 기념하기 위해 런던 동부 빈민지역인 화이트채플 지역에 인보관을 설립하며

인보관의 이름을 토인비 홀(Toynbee Hall)이라 명하였다. 토인비 홀(Gerald Vinter, 1984)에서는 교육과 개혁의 중심이 되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지식인과 노동자의 연결고리가 되는 센터가 되었다(김범수, 2010:67).

이렇게 시작된 인보관운동은 세월이 지나면서 영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주목할 만한 일은 젊은 시절에 토인비 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 중 크게 된 인물이 있었다. 관장을 지냈던 말론(Dr. Jimmy Mallon)과 허비(T. E. Hervey)는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부관장이었던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영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 되었다. 그 밖에도 토니(R. H. Tawney) 노동당 내각 수상, 사회학자인 영(Lord Michael Young), 국제가족연맹의 회장이었던 카드베리(George Cadbury)도 포함된다. 또한 미국의 시카고 헬 하우스를 창설한 제인 아담스(Jane Addams)에 이어 인보관 운동은 토인비 홀로부터 미국, 인도,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김범수, 2010:72).

(2) 토인비 홀과 부권주의

1984년 토인비 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 발표 일부 중 토인비 홀의 부권주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4년 설립된 토인비 홀이 영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토인비 홀을 방문하게 된다. 토인비 홀은 지역사회내의 외국인노동자나 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인비 홀의 사업방식이 최고하는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토인비 홀의 부권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 된다.

따라서 초기시대는 물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부권주의(父權主義 : paternalism)¹⁾는 토인비 홀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바네트가 빈곤과 죄는 구별하고 싶다는 관계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도 관계가 있었다. 관장은 정의에 정열을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죄에 희생이

1) 부권주의란 친권주의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용어는 의료계에서 '의사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돌 본다'는 인술(仁術)의 의미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권주의의 의미에는 권위와 독선, 고집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의사가 아버지의 완고한 권위와 고집으로 자식 : 환자(client)를 대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뜻을 표현하는 용어도 될 수 있다. 초기 토인비 홀이 설립된 이후 이를 견학하고 학습하려는 전 세계인들의 열화는 대단했었다. 그러다 보니 토인비 홀에 근무하는 책임자들은 권위와 독선 속에서 자만에 빠지게 된다. 이곳에서 부권주의란 당시 빈민문제 해결에 권위와 독선과 자만을 갖고 일하던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로 보면 된다. 토인비 홀은 이러한 비판을 통해 다시 한번 인보사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발전을 거듭해 간다(필자 주).

되고 있는 사람들과 대면하며 일해야 했다. 황폐한 거리, 하나의 구빈원 생활시설에서 봉사자들은 순수한 우정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그들과 생활하였다.

대학생들도 틀림없이 순수하고 건전한 사람이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깨닫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바네트는 생각하였다. 결국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이기주의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한달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한다면 그동안 갖고 있던 낡은 생각에 안주해 있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바네트는 사회변혁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완화시키는 일에는 발 벗고 나섰다. 대학생 봉사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인보관은 생활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없애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놀드 토인비의 제자였다.

토인비의 사회사상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를 특징지우는 하나의 계급간 평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상은 인보관 운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지만 토인비 자신은 삶(생존)을 파악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다. 토인비는 자신이 이스트 엔트(빈민지역)에서 직접 생활한 것이 인보관 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3) 시사점

학자에 따라서 토인비 홀에 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토인비 홀의 가장 큰 의미의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첫째는 인보관(Settlement House)이라는 명칭에서 나온 바와 같이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였다는 점이다.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였고 일부는 자원봉사로 단기간 동안 참여를 하였을 것이다.

다문화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일선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하며 거주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단기간 동안 참여하는 사람 등 유형은 매우 다양하리라고 본다. 초창기 토인비 홀에서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개량, 사회개혁(social reform) 운동을 전개한 점들은 앞으로 다문화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주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토인비 홀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빈민문제에 참여해 오는 측면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측면에서의 토인비 홀은 권위주의와 부권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필자도 1987년과 2003년 7월경 두 번에 걸쳐 토인비 홀은 견학한

바 있다. 그때도 느낀바 있었지만 정말 두 번다 예약이 없이는 토인비 홀을 견학할 수 없을 정도로 토인비 홀은 방문자가 많았다. 때문에 토인비 홀의 직원들은 설립된지 120여년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부권주의가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토인비 홀은 순수성과 열정이 보일 정도로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는 반면,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와 부권주의로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는 양면성이 엿보였다.

앞으로 기독교 다문화영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 초창기에 헌신 수고하면서 입지를 구축한 개척자들에게는 권위주의와 부권주의는 없었는지 한번 모든 것을 되돌아 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보다 더 큰 선교전략의 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2)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의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행정학이나 정치학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특히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제도 이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권화가 진행되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반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진재문, 2003 : 11-31)은 지역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선 거버넌스(governance)는 조정(steering), 안내(leading), 방향(direct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Frederickson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공공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구의 연결유형, 느슨한 결합체, 다중제도적 조직상황 그리고 새롭고 긍정적인 행정 이미지의 표현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government)는 서비스 운영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권한을 공공부분에 독점적으로 위임한 통치 방식으로 정의되며,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지방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식적이고 입헌적인 행정 구조로서 정의될 수 있다(김범수, 2010).

이를 토대로 몇몇 연구자들이 정의한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toker는 구미 각국에서 지배적인 통치 양식으로 거론되는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집권화된 국가와 지방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낮은 유형의 정부로서 상징되는 관료적 위계 체계로부터 벗어나 연합,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 등과 같이 느슨하고 보다 상호작용적인 행정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진재문, 2003. 재인용).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 주체가 지방 정부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방의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관의 이분법적 참여 주체를 넘어 삼자 이상의 협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는 수직적인 위계보다는 수직적수평적 위계를 모두 포함하는 확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 상위, 지방자치단체 -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위계 구조를 중심축으로 한다면,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의 공식적인 주체만이 아니라 지방적 공간에서 정책이나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주체들을 포함하는 통치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분권화를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다. Andrew Parker는 빈곤 완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면서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강조하였다. 그는 분권화를 정치적 분권화(political decentralization), 재정적 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 제도적 분권화(institutional decentralization)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강휘원(강휘원, 2007:7-8)은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유학생, 탈북자 등이 지역 전체인구의 4%-5%대에 달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다문화정책을 정부와 민간 NGO가 협력하여 결정 집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제기하기도 한다.

(2)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의

앞에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바와 같이 로컬 거버넌스란 우리말로 지역협치나 지역통치로 번역 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어가 로컬 거버넌스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하고 못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번역어 보다는 로컬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필자도 다문화 협치나 다문화 통치라는 번역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다문화 거버넌스”를 기초로 새로운 용어인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로컬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때이다. 최근에는 G20 회의를 앞두고 세계 경제협력체계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참고하면서“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는 기독교계 전체교단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각 교단 본부, 각교단의 지방본부, 개교회, 교회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각종 NGO 등의 협력체계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각 교단의 중앙본부와 지방본부 개교회, 교회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각종 NGO의 수직적인 관계망이 아니라, 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수평적인 관계의 다양한 모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각 교단의 정치적 분권화, 재정적 분권화, 제도적 분권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합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문화영역에서 기독교의 주요 활동 사역²⁾

1)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역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처음에는 외국인상담소, 그 다음에는 외국인노동자센터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외국인근로자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는 이주민센터로 혼용 사용하고 있다(박천웅, 2006:28).

우리나라에서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유입해서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민간 차원에서 가장 먼저 제공한 곳은 장로교서울서남노회(통합)이다.

1992년 안산시 반월공단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무렵, 장로교서울서남노회(통합) 측에서는 일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선교의 목적도 있었지만 안산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의를 하고 담당목사를 파견한다. 그리고 준비기간을 거쳐 민간에서는 한국 최초로 1994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박천웅 목사)를 설립해서

2) 기독교의 다문화와 관련된 주요 활동 사역의 내용은 김범수, 2010. 『다문화사회 십계명』. 리북에 소개된 내용을 일부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1995년 가톨릭재단인 천주교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에서도 갈릴레아(대표 Eugene Docoy)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였다. 천주교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는 1990년부터 안산에 사무소를 설립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다른 교단이나 종교단체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NGO가 증가하게 된다. 일부 선교사가 안산에서 외국인선교사역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안산에서 외국인선교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곳을 떠난 후, 안산방향을 보고 소변도 보기 싫었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간증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까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은 주로 중소기업의 직원이나 노동청의 공무원들이 담당하였다. 제도적으로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된 것은 2004년이다.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설립 운영하는데 기여한 연구보고서는 2002년과 2004년(신기동, 2002; 신기동, 2004)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에 경기도내 13개 시군에서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종교단체의 부설이었다. 또한 시설규모도 매우 영세했으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종교단체 부설로 운영되는 센터의 주 사업내용은 노동조건에 관한 상담이나 건강진료, 한국어교육 등의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지원으로 2004년에 남양주시와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등 5개 지역에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지원의 제도화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설립해 체계화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에서 외국인 담당과와 인프라가 필요함을 제기하게 된다. 2005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산시에 외국인복지과의 조직을 승인하게 된다.

2010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센터는 8개이고, 경기도와 기초 자치단체 지원으로 설립되는 곳이 8개이며,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또는 민간NGO가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의 시설을 합치면 약 200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센터는 몇 개의 센터를 제외하고는 매우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바라는 쉼터가 매우 적은 편이다.

2) ‘국경없는마을’운동

‘국경없는마을’운동은 안산시 원곡동에서 1990년대초부터 외국인사역을 하던 박천응목사의 제안으로 1996년부터 준비모임을 가져오다가 1999년부터 전개된 운동이다. ‘국경없는마을’에 대한 생각은 박목사가 다문화가정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당시만해도 국제결혼을 한 자녀들이 마치 사생아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듯한 현실을 보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최초로 관심을 갖게된 것은 1995년 국제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파키스탄 샤미 씨와 가정과 이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토마스 씨를 만나고부터 이다. 1995년 9월 호적법이 개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정 50여쌍이 모여 축하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때 이들을 위해 사용된 호칭이 코시안(Kosian)이다.

당시 모임에 참여하였던 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권리와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문제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던 ‘나눔과 일터’라는 소식지를 ‘국경없는마을’로 변경하여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인터내셔널 카페’가 운영되었다.

이들이 모여 그들나라의 전통적인 차와 전통적인 춤과 노래를 교환하던 모임은 1999년 11월 현재의 안산이주민센터로 이사하면서 ‘국경없는마을’계획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박천응, 2006:29-31).

‘국경없는마을’운동은 다음 세가지의 원칙을 갖고 시작하였다.

첫째는, ‘문제를 가진 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원칙이다. 이주노동자 선교 운동에는 그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가 간혹 있다. 한국사람이 앞장서서 리드하면 따라와 주어야 하는 교육의 대상이며 동원의 대상일 뿐이다. 종교적으로도 선교의 대상이자 교화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바꿔서 보자는 원칙이다.

둘째는 ‘문화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원칙이다. 차별문화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과 평등한 문화 즉 ‘생명의 평화가 넘치는 축제의 문화’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과 연대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축제문화를 되살려 보자는 원칙이다.

셋째는 ‘이주노동자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길’이라는 원칙이다. “아버지가 내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소서(요 17장)”라는 예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우주만물이 생물과 무생물이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원칙이다(박천웅, 2006:280-281).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국적과,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인 귀속감에 관계없이 우리모두가 한 인간으로서 공동체 문화와 제도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국경없는 마을(<http://www.byillage.org/xe/home>)’ 운동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교육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면서 매우 의미있는 사역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타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없는마을’ 운동이 시작된지 15년여가 되는 현 시점에서 안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국경없는마을’ 운동이 다른 지역사회에서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 전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모임에서 심도있는 논의속에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3) 이주노동자 심방사역

최근 들어 많은 교회에서 국내거주 이주노동자들이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 항에서는 평택시 지산동 소재 남부전원교회(담임목사 박춘근)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심방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남부전원교회에서는 1996년부터 평택과 오산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디아스포라(특히 필리핀 노동자 중심)를 조직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남부전원교회가 디아스포라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전개한 선교사역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다. 의식주와 관련되는 것들을 제공하며 가족들과 국제전화통화서비스도 제공했다. 송금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의료 및 인터넷서비스,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문화이해, 밀린 임금 받아주기, 실직자들을 위한 취업지도 등을 전개해 왔다. 이상에서 제공한 사업들은 다른 노동자센터나 이주사역을 한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남부전원교회는 2003년 8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5년여 동안 대부분 귀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착안해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향을 방문해 가족을 만나고, 간단한 선물과 성경을 나누어 주고 노방전도를 통해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귀국하였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노방전도를 필리핀 현지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가족을 심방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주노동자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물론, 이곳 교회에서 심방을 다녀온 교인 특히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지의 심방사역³⁾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는 심방가기 전에 이주노동자 형제들과 이곳 사역자들과의 개별사진, 단체사진 기타 한국에서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비디오로 준비한다. 이러한 사진과 비디오를 준비해 보여주며 소식을 전할 때, 가족과 이웃들은 한동안 울음바다가 된다고 한다. 또한 그곳에서 찍어온 사진이나 비디오를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형제들에게 보여줄 때, 이곳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진다고 한다.

둘째는 가족이나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막대기 고무풍선과 학용품을 준비해 가는데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한다. 막대기 고무풍선으로 이런 저런 모양을 만들어 놀이를 하고, 또한 인근 지역에서 모인 아동들에게 준비해간 학용품은 아주 귀중한 선물이 된다고 한다. 셋째로 한 가지 안전에 유의할 사항은 현지를 방문할 때 반드시 현지의 목회자나 현지 통역자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기에 거리에 따라 사전에 심방 스케줄을 철저하게 잘 조정해야 한다.

남부전원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필리핀인과 중국인⁴⁾들을 위해 모국의 가족을 심방하여 소식을 전해주는 심방사역은 참으로 참신하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의 노동자로 활동하다가 남부전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3명은 예수님을 만나 귀국하여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 외국인노동자 사망자의 유골함 사역

외국인노동자 사망자의 유골함 사역은 김해성목사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필자가 김해성목사를 처음 만난 것은 2000년대 초였다. 그 당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 남부전원교회에서는 디아스포라 필리핀인 이주노동자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자원봉사그룹을 가리켜 스태프(Staff)으로 호칭하고 있다.

4) 남부전원교회에서는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원신즈찌아(溫馨之家)란 선교회를 조직하여 필리핀 디아스포라와 같이 이주노동자 심방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원신즈찌아(溫馨之家)의 의미는 “따뜻한 향기가 나는 집”이란 의미로 중국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단어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 비용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차 방문을 했었다. 당시 성남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김해성목사 사무실을 방문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확인하고 설명을 듣던 중 사무실 한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항아리가 보였는데 문의하니 유골함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된 노동자들을 화장하여 가족들에게 찾아가도록 주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도 찾아가지 않는 유골함은 어쩔 수없이 사무실 한편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은 김해성목사가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어느 추운 겨울날, 경기도 광주에 갔다가 오는 길에 그는 얼굴이 시커멓고 의복이 허름한 외국인 2명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버스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얼마 전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왔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곤란에 처해있는 그들을 차에 태워 센터로 데려가서 재워주고 직장도 구해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그가 운영하는 센터에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김해성목사는 대학졸업 후 줄곧 외국인 노동자 운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지구촌사랑나눔운동 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2003년 4월경, 날이 갈수록 센터에 드나드는 스리랑카 노동자 수가 늘어나 200여 명에 이르게 되자 김목사는 그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그때가 2003년 4월이었는데 스리랑카 설날을 맞아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자신의 작은 아버지를 파티에 초청해줄 의사를 있겠느냐고 했다. 작은 아버지는 당시 스리랑카 야당 국회의원이었다.

김 목사는 그의 작은 아버지를 초청해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이후에 초청을 받아 스리랑카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 야당국회의원이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04년 말 스리랑카에 지진해일(쓰나미)이 일어났을 때 김 목사는 고려대의료원 의료진과 같이 가서 한 달간 진료지원을 했다. 이뿐 아니라 430만 달러어치의 의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설득한 것이다. 라자팍세 대통령은 당시 국무총리였다.

스리랑카 노동자를 사랑으로 보듬어 준 그는 그들 나라에 가면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최근에는 코끼리 암수 한 쌍을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코끼리는 국가 간 친선의 표시로 사용되는데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나라의 동물원에는 가임능력이 있는 암코끼리가 없어 코끼리의 씨가 마를까봐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김해성 목사로 인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김해성 목사는 방글라데시와도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한국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본국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김 목사가 수습한 시신이 1500구가 넘는다고 한다.

타국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들을 위해 김 목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그가 이런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다면 반한 감정은 거세어 졌을 것이다.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의 실천은 이렇게 기적을 일구어 내고 있다.

김해성 목사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다문화시대 민간 외교관으로서 독특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재한몽골학교 사역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최초로 설립된 학교는 1999년 12월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 재한몽골학교(대표 유해근 목사)로 알려지고 있다. 재한몽골학교는 현재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설립 운영중에 있다.

재한몽골학교는 몽골근로자들이 일터로 나간 후 하루 종일 방치 되다시피 하는 몽골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초창기 선교회의 한쪽에서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재한몽골학교는 이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최초로 인가를 받아 지난 2005년 7월 1회 졸업생에 이어 2008년 4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동안 이 곳 재한 몽골학교에는 약 400여명의 몽골 근로자 자녀들이 거쳐갔으며 지금도 8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재한 몽골학교에서는 현재 한국어와 몽골어 이외에 영어, 수학, 몽골역사와 몽골윤리등의 필수 교과목과 음악, 미술, 과학실험, 태권도 그리고 IT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몽골 두나라 교육과정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8명의 몽골인 전담 교사와 20여명의 한국인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진은 몽골학생들의 학력과 한국어 수준을 감안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몽골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몽골어와 수학의 경우 몽골현지와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나이에 맞게 학년별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IT등 한국어를 사용하고, 학생에 따라 수학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수업은 철저히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분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매일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연관찰학습, 지방 문화재와 산업시설 견학, 수학여행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나섬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해근 목사(대한예장, 통합측)는 1992년 구로공단에서 외국인노동자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에 성수공단으로 이전, 2002년에는 재한몽골 학교를 광장동으로 이전, 2004년에는 현재 사역중인 선교센터를 이전 본격적으로 광장동과 양평에서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재한몽골학교, 몽골문화원, 나섬다문화생태마을, 나섬다 문화학교, 나섬어린이 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http://www.nasom.or.kr>).

6) 이주민의 쉼터사역

부천이주노동자센터(대표 송연순 목사)부설로 운영되는 이주민의 쉼터는 2001년 부천의 밀알감리교회(담임:박기서 목사)가 지역의 4개교회와 공동투자로 뜻을 모아 설립하였다. 송연순 대표는 부천시의 20여개의 회원을 중심으로 2006년에는 부천시다문화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역사회내에서 다문화사역을 주관하고 있다.

이주민의 쉼터에는 연평균 20여명의 이주민이 자립하여 나갈때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밀알감리교회와 지역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헌금과 후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송 대표는 매일 매일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어머니와 같이 상담을 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때로는 법정에 나가서 이주여성들의 변호업무도 대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들을 상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7) 다문화대안학교 사역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120만 여명에 이른다. 그중 결혼이주여성이 18만 여명이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12만 여명이라고 한다(여성부 자료, 2010. 8).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진학해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년 32만 쌍에서 34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그중 약 10~12%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3만 여명의 다문화가정자녀(혼

혈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설립 운영중인 다문화대안학교는 2006년 9월에 설립된 광주 새날학교(광주광역시, 2010년 5월 공립허가)와 부산 아시아공동체학교, 2007년 9월에 설립된 다문화국제학교(포천시) 를 포함하여 10여개가 운영중(신상록, 2010)에 있으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에서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국제다문화학교를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찬반의견이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들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을 위해 다문화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별도로 다문화대안학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일반 대안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8) 결혼이주여성 리더 육성 사업

평택대는 2006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다문화가족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어 같은해 8월 대학내 부설로는 최초로 다문화가족센터(초대소장 김범수) 를 설립 운영하였다. 그중 의미있는 일은 결혼이주여성 14명을 대학원과정에 입학시켜 결혼이주여성 리더를 육성하였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일부 여성은 대학원에 입학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여 모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커뮤니티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치는 이도 있다.

4. 다문화영역에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주요활동사항

1) 정부의 주요활동사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3D 업종영역에 근무할 대체인력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전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반원공단지역이 형성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1990년대에는 안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되

어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 후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2006년 2월 13일, 한국이 급속하게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행정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같은해 4월 26일 노무현대통령 주제하에 열린 각료회의에서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의 두정책이 채택되면서 “이제 한국도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다문화정책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들과 사회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그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교과내용을 다문화와 타인종에 대한 관심과 관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여 다문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관련 주요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년 5월에 제정되었으며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와 함께 재한 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와 사회적응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영주권자 및 난민에 대한 처우 그리고 국적취득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교육,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200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는 국내 및 국제결혼업무의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법령준수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패쇄 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

(4) 국적법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1997년 제정 2008년 3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률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일반귀화요건, 간이귀화요건, 특별귀화 요건, 수반취득(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등,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3년 8월 제정되어 2010년 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사업장의 적용범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작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근로계약,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 취업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민간의 주요활동사항

다음에 제시한 사업들은 정부지원 민간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다음사업들은 나름대로 전달체계가 확립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18만 명이 된다고 한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1만2천여 명. 당분간 결혼이주여성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집간 여성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곳은 친정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친정은 멀어도 너무 멀리 있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전국 170여 개소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8만여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결혼이민자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결혼이민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liveinkorea.mogef.go.kr>)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저런 연유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자녀양육과 상담, 건강, 한국의 문화,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배워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곳, 이곳이 바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식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아직 시설들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전문 인력과 예산지원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친정과 같은 역할을 대신해 주는 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여인터'라는 약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여인터'. 먼 옛날 우물가에서 모인 아낙네들의 모임이 연상되는 단어다. 이여인터는 2001년 설립된 한국이주여성인권센

터(대표 한국염)의 약칭이다. 이여인터의 활동을 살펴보면 첫째는 상담활동 영역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상담과 법률지원 그리고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폭력상담이다. 둘째는 교육문화활동 영역으로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적응교육이다. 셋째는 정책연구활동 영역으로 이주여성권익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의 개최이다. 넷째는 모성보호활동영역으로 이주여성의 건강권과 신생아 보호를 위한 활동이다. 다섯째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출판홍보사업과 이주여성들의 나라별 모임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이 가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주민의 신고로 가장 먼저 연결되어 신고 되는 곳은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그곳이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이여인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여인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충북지부, 부산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지부 5개소에 지부를 두고 연계 운영 중에 있지만 숫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홈페이지는 <http://www.wmigrant.org> 이다.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꿈에 부풀어 한국에 오게 된다. 한국에 가면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집에서 멋있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돈을 벌어서 친정 식구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고 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

1577-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센터장 강성혜)는 국내거주 이주여성들을 위한 생명의 전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이주해 살고 있는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365일 어느 때나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이하 이주여성긴급센터)에서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파갈로그어 등 8개 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주여성긴급센터는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4개소에 지부를 두고 연계해 운영 중에 있지만 숫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주여성긴급센터는 2006년 개소 때부터 2009년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

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0년부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http://www.wm1366.org/>

5.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의 선교전략

1) 해외선교와 국내선교

지난 20여년간 기독교계에서는 다문화사역을 위해 일부 교단이나 개교회를 중심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수행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선교활동에 비해서 국내에 와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선교전략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보편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부교단이나 개교회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 다문화선교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20만명의 다문화가족 이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계의 커다란 선교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120만명의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선교전략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논의되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여년간 소수 교단과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다문화사역에 참여하여 왔지만 가장 미흡했던 점은 각 교단들이 다문화네트워크를 체계적인 선교전략을 세우는 데는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 제2회 기독교 엑스포를 통해 기독교내 다문화선교전략을 모색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국내 다문화선교네트워크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국내 다문화선교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조직화된 것은 1993년 9월 한국교회의 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초대회장 유해근, 이하 한교외노협)라 할 수 있다. 한교외노협은 창립후 느슨한 형태로 선교협의회를 조직 운영하여 왔다. 창립후 약 30여개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7년 IMF위기를 맞이하면서 2000년대 초까지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다가, 다시 연계모임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2008년 11월“이주자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대표 유해근, 약칭 : “이선한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선한네트워크”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5백여의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09년 8월 15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선한네트워크”대회를, 2010년 8월 22일에는 안산 꿈의교회에서 이주자선교 찬양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분기별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유해근, 2010).

앞에서도 제기하였지만 “이선한네트워크”는 정말 다문화네트워크는 Stoker학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상호 회원간에 느슨한 형태로 회원단체간에 파트너십을 유지해가고 있다. 이밖에도 각 교단별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문화선교사역을 하는 단체들의 모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교단을 아우르는 조직만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3)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의 추진방안

(1)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한 다문화거버넌스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Stoker학자가 제시한 “이선한네트워크”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조직에서 이제는 좀더 한단계 나아진 체계적인 형태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가칭 00기독교다문화협회나 00기독교다문화협의회라는 명칭 보다는 가칭 “한국기독교다문화포럼”이라는 네이밍을 제안한다. 회원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짐하는 협회(Association) 보다는 연구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포럼형태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삼자의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첫째는 각교파를 초월한 교단의 참여, 둘째는 각교파를 초월한 개교회의 참여, 셋째는 각지역별 기독교계 NGO, 매스컴, 학자 관심있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고루 참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 지역별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2) “이선한네트워크”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조직체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앞으로 지역별로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선한네트워크”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조직체가 지역별로 계속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가 일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나아가서 공식적인 조직이 탄생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각 교단의 중앙본부(명칭은 다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중앙본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앞의 이론 중 Andrew Parker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교단의 정치적 분권화,

각 교단의 재정적 분권화, 각 교단의 제도적 분권화를 이끌어 내어 기독교 다문화거버넌스가 수평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중심에는 한국기독교사회봉사단의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계에서 다문화영역에 사역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와 선교전략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앞에서 제시한 기독교의 다문화 사역들은 수도권내에서의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밖에도 더 많은 지역과 교회 그리고 NGO에서 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으나 전체적으로 게재하지 못하였다.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이 매우 의미있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문화사역에 기독교계가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교단별 또는 개교회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는 점이다. 아마 이러한 지적은 개신교의 특성상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20만명이 되는 현시점에서 시기적으로 기독교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은 좀더 빠르게 조직되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조직체는 바로 「기독교 다문화 포럼」을 조직화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계에서 다문화사역을 먼저 개척하고 지식을 공유한 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조직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 토인비 홀의 교훈과 같이 권위주의와 부권주의는 우리 기독교 다문화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교단, 개교회, NGO, 매스컴, 학계,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기독교 다문화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에 와 있는 120만명을 향한 외국인 선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선교전략들이 탐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 강휘원. 2007.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지역 거버넌스”. 『다문화가족연구』.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 김범수. 2010. 『다문화사회 십계명』. 리북.
. 2010.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 * 김해성. 2005. 『구약성서의 외국인 이주자 개념과 한국 이주자 선교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목회학박사학위논문.
- * 박천웅. 2005. “이주민과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총람.
. 2006.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국경없는 마을.
. 2007. “현 단계 이주민 복지의 실태와 과제” 논문(미간행), 한국교회부흥 100주년 기념 신학학술포럼.
- * 신기동 a. 2002. 『경기도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b. 2004.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의 영향과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 신상록. 2010. 8. 14.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장과의 면담.
- * 유해근. 2006. 『노마드에게서 배우는 한국교회의 미래』. 나그네.
. 2008. 『노마드 예수』. 나그네.
. 2010. 9. 13. 나섬공동체 대표와의 면담.
- * 진재문. 2003. 『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의 로컬거버넌스 : 그 기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Workshop 자료.
- * Gerald Vinter. 1984. “Toynbee Hall at 100 : Myth and Reality”. Toynbee Hall.

국경없는마을. <http://www.bvillage.org>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wm1366.org>

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나섬공동체. <http://www.nasom.or.kr>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적응과 교회의 역할⁵⁾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교수 /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강 기 정

I.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에 외국인의 유입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한 노동 공급을 채우기 위한 필요에서 부터이다. 이후 2000년대부터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라는 소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는 구성이나 미래지향에 있어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 합법과 불법체류 자격의 이주노동자, 전문인력,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2세 자녀, 탈북주민인 새터민 등 - 다양한 성, 계층, 직업, 문화배경, 이주동기를 가지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5만 5천 654명에 이르렀고, 결혼이민자는 12만 6천 673명으로 남자가 1만 5천 323명(12.1%), 여자가 11만 832명(87.9%)으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문화권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경우에도 상호 가치관, 생활방식, 의사소통 등 다양한 갈등으로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경우 다양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결혼은 사적이며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의 결합으로, 가족관계 안에서 풍부한 포용과 이해가 바탕이 될 때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우리사회의 국제결혼은 개인적 선택의 차원을 넘어 저출산고령화 인구 현상,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결혼중개업체의 상업성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력과 결혼생활 내부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족의 대부분은 문화의 차이,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5) 본고의 내용은 발표자가 백석대학교 생명신학포럼(2009)에서 '생명신학과 다문화가정' 발표자료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2010)의 '다문화가족정책 비교분석'의 내용을 발췌 재정리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결혼은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들을 발생하고 있다(08.2.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 편탄란 투신, 09.2. 캄보디아 여성 폭력남편 우발적 살해, 10.7. 정신질환 남편에게 살해된 탁티황옥). 또한 다문화 가족의 이혼건수가 11,697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0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6)』, 『다문화가족지원법(08.9)』, 『외국인주민지원 조례(09.206개)』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08.11 보건복지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08.10 교과부)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09.12)」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2010년 현재 총 171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부처별 분야별 지원 대책을 통합 체계화하여 지원 정책을 재정비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2010-201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10.5.7)(강기정·변미희, 2010).

한편 성경에는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다민족·다인종을 품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라"(출 22:21).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하여(요 3:12), 하나님의 자녀 되기(요 3:16)를 원한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작고 가난한 빌립보 교회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빌 4: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빌 2:1-5), 관대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다.

구약성경의 룯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헛세드(인애, 관심, 배려, 사랑, 회복 등)의 실천을 보여 주고 있다. 룯기는 종교와 도덕이 타락하여 국가적으로 혼탁한 정치적 상황과 흉년으로 생산력이 저하되어 빈곤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룯은 이방여인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였고, 남편의 사망과 이주 그리고 재혼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였다. 룯기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 환경이 오늘날과 다르지만 다문화가정 여성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지지체계 및 지원서비스는 룯기의 사적가정을 모델로 분석 가능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다문화정책 및 서비스, 그리고 룯기의 다문화가정 정착모델에 근거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결과는 기독교의 다문화가정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며, 한국 교회의 다문화 선교 사역의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다문화가정의 현황

1. 다문화가정의 현황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혼인귀화자와 결혼이민자를 합한 다문화 가구수는 167,090명이다(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 125,673명, 혼인귀화자 41,417명).⁶⁾

〈표 1〉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가구의 모수추정 결과 (단위 : 가구수, %)

지역	다문화가족기초현황자료(복지부)	비율
전국	154,333	100.0
서울	34,652	22.4
부산	7,372	4.8
대구	4,929	3.2
인천	9,804	6.3
광주	3,182	2.1
대전	3,208	2.1
울산	2,888	1.9
경상	40,199	26.0
강원	4,144	2.7
충북	4,525	2.9
충남	7,644	5.0
전북	6,532	4.2
전남	6,938	4.5
경북	7,338	4.8
경기	9,527	6.2
제주	1,451	0.9

자료 :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6)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상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다문화가족으로 개념화 하고 이?T다. 즉 귀화한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전국 다문화가족은 2009년5월 기준으로 154,333가구이다(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김승권 외).

중국 조선족 30.4%로 가장 많고, 중국 한족 27.3%, 베트남 19.5%, 필리핀 6.6.%의 순이다. 입국연도별 출신국 분포는 전반적으로 1990년 이전에는 일본출신의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았고(전체 27.1%), 1990-1994년 중국조선족 출신, 1995-1999년 50.3%과 2000-2004년 중국조선족 출신 43.4%로 가장 많았다. 2005년 이후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중 55.7%가 입국하였고, 한족 등 중국 출신이 33.5%로 중국 조선족보다 많았고, 2005년 이후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31.1%로 급증하였다.

2005년 이후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의사소통, 자녀교육 등에 중요한 정보이며, 한국의 인적자원 측면에 관심이 요구된다.

〈표 2〉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입국연도

구분	1990년 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계(수)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0.8	2.9	14.3	26.3	55.7	100.0(111,408)
중국(조선족)	0.7	5.5	24.9	38.6	30.4	100.0(33,990)
중국(한족 등)	0.5	1.8	9.2	20.6	67.9	100.0(30,607)
베트남	0.1	0.2	1.5	10.7	87.6	100.0(23,359)
필리핀	0.2	1.4	16.2	37.5	44.7	100.0(7,907)
몽골	0.5	0.0	12.1	31.7	55.7	100.0(1,676)
태국	0.1	0.5	12.0	51.6	35.7	100.0(1,528)
캄보디아	0.1	0.0	0.4	3.9	95.6	100.0(2,308)
일본	5.9	10.3	41.8	20.9	21.1	100.0(4,825)
북미·호주·서유럽	11.1	8.5	19.0	34.7	26.6	100.0(504)
기타	2.9	2.2	11.4	39.7	43.8	100.0(4,702)

자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동 지역(72.1%), 읍면지역(27.9%)로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시도분포는 중국 조선족 및 한족 등 일본, 북미, 호주, 서유럽, 몽골, 태국 등의 출신 이민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베트남 출신 이민자는 경기, 경북, 경남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 출신 이민자는 경기와 전남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혼중개업체가 특정한 시기에 국제결혼 알선이 용이한 국가를 택하여 접근하고 알선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 24세 이하는 21.1%, 25-29세는 20.2%인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40대가 30.5%, 35-39세가 20.9%로 나타났다.

〈표3〉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평균 연령 (단위 : 세)

구분	부인 본인(A)	남편(B)	부인과 남편의 연령차이(B-A)
전체	33.3	43.2	9.9
중국(조선족)	39.5	46.2	6.7
중국(한족 등)	33.9	42.7	8.8
베트남	24.3	41.3	17.0
필리핀	31.7	42.6	10.9
몽골	31.3	41.3	10.0
태국	34.5	41.6	7.1
캄보디아	23.5	41.0	17.5
일본	40.0	42.3	2.3
북미·호주·서유럽	38.3	40.3	2.0
기타	32.0	40.9	8.9

자료 :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만남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 볼 때 동 지역의 경우 ‘친구, 동료의 소개’가 가장 많았으나, 읍면지역은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만남이 많았다.

〈표 6〉 결혼이민자의 현 배우자 만난 경로 (단위 : %, 명)

구분	결혼중개업체	가족 친척의 소개	친구, 동료의 소개	종교기관을 통해	스스로	기타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25.1	23.3	23.1	6.4	18.2	3.9	100.0(117,854)
동 지역	20.4	23.8	25.3	4.6	21.6	4.4	100.0(85,027)
읍면지역	37.3	22.0	17.4	11.3	9.3	2.7	100.0(32,827)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27.0	24.1	22.9	6.7	15.8	3.5	100.0(108,772)
동 지역	22.3	24.9	25.2	4.7	19.0	3.9	100.0(76,805)
읍면지역	38.2	22.2	17.2	11.4	8.3	2.6	100.0(31,967)

주: 1) 1990년 이후 결혼한 이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언어문제(22.5%), 경제적 어려움(21.1%),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14.2%)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길어질 수록 언어문제의 어려움은 줄어드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과 교육이 힘들다가 증가하였다.

〈표 8〉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한국생활에서 현재 가장 힘든 점
(단위 : %, 명)

구분	없다	외로 움	가족 갈등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편견 차별	음식 기후	기타	계(수)
전체	12.5	9.9	3.5	14.2	21.1	22.5	7.0	3.4	2.4	3.5	100.0(117,370)
중국(조선족)	17.5	11.5	2.8	14.9	31.6	2.8	5.8	6.1	1.5	5.4	100.0(35,148)
중국(한족 등)	9.6	11.1	2.6	12.3	19.9	30.1	6.9	2.8	2.2	2.7	100.0(32,271)
베트남	12.0	6.3	3.5	15.2	12.7	38.9	4.0	2.2	3.1	2.1	100.0(24,900)
필리핀	7.0	10.6	5.7	13.5	12.8	27.5	14.5	1.1	4.0	3.1	100.0(8,385)
몽골	11.9	13.3	5.4	11.9	19.8	17.8	9.2	3.3	4.3	3.2	100.0(1,763)
태국	7.4	8.4	7.4	13.9	18.6	29.2	8.6	1.5	2.2	2.9	100.0(1,675)
캄보디아	11.0	9.8	4.9	10.7	8.0	40.5	8.3	1.1	3.3	2.3	100.0(2,591)
일본	7.5	4.5	8.1	23.3	25.7	14.0	11.2	0.9	1.6	3.2	100.0(4,914)
북미·호주·서유럽	29.3	9.2	0.9	9.2	6.0	15.8	17.3	2.6	2.8	6.9	100.0(533)
기타	13.7	12.9	3.5	12.9	16.9	20.2	11.4	2.1	3.5	3.0	100.0(5,190)

자료 :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Ⅲ. ‘룻기’ 성경적 정착모델

1. 개인차원 접근 : 룻의 신앙(信仰)과 인애(仁愛)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는 다문화가정이며,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룻 1:1,2). 두 아들은 모압 여자인 오르바, 룻과 오늘날의 국제결혼을 하였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10여년 후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롯만이 남게 되었다(룻 1:3-5). 이룻의 신앙과 인애는 좌절에 빠진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었고, 룻의 다문화가정은 신앙에 근거한 가족공동체로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⁷⁾.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른 지혜로운 태도를 취한다. 룻의 신앙(信仰)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17).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려는 결심의 이유가 나타난 대목이다. 즉 룻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유일한 신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룻의 행위는 개인적 신앙과 인애,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또한 룻은 동서 오르바와 달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나오미에 대한 인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룻은 슬픔과 고독에서 절망하기 보다는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룻 1:6), ‘일어났다’고 하였다. 이는 룻의 생명(영생)으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족지원 접근 : 영적 멘토 나오미와 보아스의 배려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요인 중 남편과 가족은 가장 중요한 지지자이다. 국제결혼 초 룻의 남편 사망에 따른 룻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룻의 상실감은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지지자였을 것이다. 나오미는 절망에 빠진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접하게 한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하였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룻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졌다. 이의 과정에서 룻은 곤고한 처지에 빠진 나오미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며, 이러한 헌신의 삶이 있었기에 룻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룻 2-4장, 룻 1: 6-14). 보아스는 남편으로써 뿐 아니라 공동체의 지지자의 역할을 통해 룻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고 있다⁸⁾. 보아스는 룻에 대한

7) 건강가정의 요소는 가정문화 창조유지(가족사명과 목표), 부부간 열린대화, 자녀성장지원, 평등한 가족, 합리적 자원관리, 안정적인 의식주 관리, 일가정 조화, 가족자원봉사, 건강한 시민의식이다(강기정 외, 2009).

8) 계대결혼(繼代結婚)은 (구약시대)미망인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죽은자의 형이나 동생이 그 미망인(형수 또는 계수)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는 죽은자의 이름을 유지시키고, 가족 내에 그의 자산을 계

배려와 사랑, 그리고 책임감으로 지지하고 있다(룻 2:5-6). 보아스는 룻을 '인애'라는 말로 그녀의 현숙함을 표현했다. '인애(仁愛)의 히브리어 '헤세드'(hesed)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우정이나 사랑에도 사용된다. 보아스는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였고, 룻과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룻은 이방 여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에 룻이 사용된 것이다. 결국 룻의 신앙과 인애는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아 시모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3. 공동체차원 접근 : 이웃의 지지와 사회적 배려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는 평화를 사랑하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며, 한 아기의 출생을 축복하며 마무리 된다.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인 보아스와 가난한 모압 여성인 룻이 이웃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결합의 열매인 아이가 나오미의 품에 놓인다. 이를 지켜보는 평화를 사랑하는 공동체는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관계를 칭찬한다. 우리사회는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시점에 지역공동체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룻 2:2). 룻과 나오미가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룻 1:22)는 것은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침묵 속에서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이 상황에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룻 2:3)는 배후에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개입되었음을 알게 한다. 또한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10-11) 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 수 있다. 사사시대의 이삭줍기라는 경제활동은 하나님의 분명한 권고(레 19:9, 23:22)로 제시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에 대한 일종의 관습적 차원의 사회적 배려로 평가 할 수 있겠다.

속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일명 형사취수(兄死取嫂)와 유사하다.

IV. ‘룻기’ 에 기초한 다문화가정의 적응과 교회역할

1)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아 인식'

이들은 ‘나의 삶은 나의 것’으로 진솔한 것과 같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개척정신이 있다. 이들의 긍정적인 자아 인식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행복한 가정을 희망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된다. 룻기에의 룻은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하였다. 여기서 다문화가정 여성과 룻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에게 있는가?'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여성은 자기 자신과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생활의 적응단계에서 이들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할 것이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대처하려 할 때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지치고 낙심할 것이다.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높은 이혼율은 이를 반영한다 하겠다.

반면에 연구 참여자중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여자와 센터의 따뜻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최근 교회에 나가고 있는 <참여자 4>는 자아 인식과 관계 형성에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의 시작 단초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다문화가정의 생활적응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남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이 중요하였다고 진술하여, 룻기의 룻, 보아스, 나오미,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편의 사랑과 지지는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한국생활 적응이 어려울 때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 남편은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어요. 남편은 말을 많이 안하지만 제 목소리 들으면 제 기분 바로 알아요. 우리 남편은 힘을 주어요(참여자 5).

룻기의 보아스는 관대와 이해, 인애, 책임감을 가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전적인 신뢰와 지지는 룿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 자립적인 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의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 남편의 지지는 최우선이다. 즉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위해서는 룿기의 보아스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중 기독교인 남편은 2명에 불과하며 이들도 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보아스의 헛세드를 현재의 남편들에게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룿에게 생명을 접하게 해 준 영적 멘토이다. 룿은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한다. 룿기의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오늘날 다문화가정에서 고부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시어머니 무섭지만 짱예요'라고 진술한 것처럼,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영적 지지자와 멘토가 필요한 것이다. <참여자 4>는 시댁이 기독교 가정이다. 교회 다닐 것을 강요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는 모습을 편안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나오미와 같은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 센터 이용자 중 기독교인은 적으며, 이들의 시댁도 기독교 가정은 매우 적다.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나오미와 같은 영적 멘토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의 방안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다문화가정 여성 '기독교문화'

연구 참여자들은 C 센터에서 기독교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들은 우선 센터의 규모와 운영 시스템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룿기는 룿이 경험한 헛세드, 즉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의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센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설립되었다. 따라서 룿기의 지지체계로서 센터는 나오미, 보아스,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기독교문화를 접하고 있었다. 이들은 센터가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 편안하다고 하였고, 매일 아침 예배와 기도, 찬양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센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여성은 센터가 가족 같이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하였다.

조금 씩 익숙해져서. 근데 요즘은 마음이 편해지고. 아침에 예배하고 제가 힘들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센터 선생님이랑 같이 교회 가요.

여기서 결혼 다시 했어요. 전통식인데 친정엄마가 앞에 앉아야 한데요. 선생님 엄마되어 결혼했어요. 선생님이 성경 선물로 줘요. 항상 저 잘 살라고 기도한다고 말해요.

센터 선생님들은 룯기의 보아스, 나오미의 역할을 오랜 시간 묵묵히 기쁨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잘해주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고, 교육내용에 스며져 있는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라는 질문은 룯이 나오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A(46세)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실족하시는 것을 안타가워 하시듯. 저에게 보내 준 다문화가정 여성을 볼 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선생님들은 다문화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다.

V. 나가는 말

교회는 룯기의 하나님의 생명을 실천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사회의 제 1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교회의 다문화가족 실천과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여성인 룯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는 나오미, 보아스, 이웃의 지지가 중요하였다. 특히 룯의 영생을 통한 회복(신앙), 나오미와 보아스의 가족지지, 이웃의 지지와 축복에서 성공적인 적응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교회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있어 적용가능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기독교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하며,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태복음 7:14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임을 믿고 감사하며, 설립 목적에 따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 영적 회복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섬김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을 지원 할 영적 멘토는 누구인가? 다문화가정 여성과 직접 만나 관계를 맺게 되는 선생님(한글지도사, 방문지도사, 학습지도사, 언어지도사 등)과 동료(다문화가정 여성)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앙으로 준비된 기독교인에게 다문화인 식교육과 전문기술을 교육하여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사역자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3)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 우리 교회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교회가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는 현재 기독교인들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설교 시 다문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인의 자세와 역할을 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다문화가정 여성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존엄하게 지은 피조물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② 면접 참여자들은 교회의 전도와 강요가 부담스럽고 싫다고 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강한 자아 인식과 니드를 살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는 절기에 다문화가정 여성과 만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들 가정과 신뢰감을 갖을 수 있다.

③ 교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실천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회내부와 외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가정 여성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Ⅰ 참고문헌 Ⅰ

- * 강기정 변미희(20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37-140.
- * 강기정(2009). 생명신학과 다문화가정. 생명신학포럼 자료집.
- * 구치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 김진희·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 김형균(2007).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 부산발전연구원
- * 배성우·신원식(2005). CES-D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요인구조 분석. 한국보건사회학회지
-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 이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9
- * 장운정(2007).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정기선·김영혜·박경은 외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경기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 * 천혜정 외(2009).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의 가족. 서울 : 시그마프레스.
- * 추현화·박옥임·김진희 외(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2.

- * 한진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 통계청(2009). 인구동태(혼인).
- * 보건복지가족부(2008). 혼인이혼 보도자료.
- *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 Elmer, Duane(2006). Cross-cultural Servanthood (Serving the World in Christlike Humility). Intervarsity Press.
- * Grove, C. J. and I. Torbiorn. (1985). A New Conceptualization of intercultural adjustment and the goals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 205-233.
- * Winton, C. (1995). Frameworks for studying families, Guilford, CT; Duskin Publishing Group.

“다문화와 사회적기업 - 나섬의 사역과 비전”

(사)나섬공동체 대표 유 해 근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이란 공공의 사회공헌과 기업의 영리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매우 의미있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즉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을 말하며 좋은 일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07년1월3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안을 공포하였고 7월1일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전국에 353개(2010년7월30일 기준)가 있으며 국외에도 2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5만 5천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며, 총 고용의 5%를 흡수하고, GDP의 10%를 담당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사회적기업이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go.kr>)

2. 나섬공동체 소개

나섬공동체는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공동체는 1996년 독섬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섬기고 선교하기 위하여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는 바로 <나섬공동체>의 모태가 된 기관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들을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 12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섬공동체는 바로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창립된 선교공동체이다. 나섬공동체 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1996년에 설립된 우리 선교회는 나섬공동체의 모태가 되는 기관이다. 현재 25,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몽골권과 서남아권,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권, 필리핀을 비롯한 영어권 중국권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매주 약 200명 정도가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디아코니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선교회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디아코니아 프로그램은 상담과 언어교육 등 문화 적응 프로그램, 치과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실직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쉼터 선한사마리아인의 여인숙의 운영과 무료 급식 사업이 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외국인신앙사경회(구정연휴), 외국인체육대회(매년6월), 다문화축제 및 바자회(매년10월), 우리국토순례(추석연휴), 나섬페스티벌(성탄주일) 등의 연중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재한몽골학교



1999년에 설립된 재한몽골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 몽골인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세워진 학교다. 우리나라에 수십 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지만 재한몽골학교와 같은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하여 세워진 학교는 이것이 유일하다. 2005년 2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외국인 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약 82명의 몽골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특별히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인 나섬의 집과 요셉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명의 아이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부족한 학교 시설로 입학을 위해 찾아오는 몽골아이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새로운 부지에 학교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3) 나섬다문화학교



우리나라에는 약 20만 명의 결혼 이민자가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이주여성이다. 이들이 당하는 언어와 문화적응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나섬공동체에서는 2006년부터 나섬다문화학교를 세워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실 등 다양한 한국적응 프로그램과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중 내내 운영하고 있다.

4) 나섬다문화 어린이집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반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미취학 몽골 아동들을

24시간 보육하는 다문화 어린이집으로 지난 2007년 1월 개원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5명의 보육교사가 17명의 몽골을 비롯한 다문화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월요일이면 어린이집에 오고 토요일이면 다시 엄마에게 돌아간다.

나섬어린이집은 단순한 어린이집만의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독교교육이라는 너무도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기도와 찬양을 배운다.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심정으로 맑고 깨끗한 몽골과 다문화 아이들의 영혼에 복음의 수를 놓는다. 예수의 마음을 저 아이들에게 그려 넣는 것이다.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교육이며,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세계선교다. 이것이 이 시대 선교의 대안이며 희망이다. 우리 안에서 대안과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여기가 세계선교의 대안과 희망의 못자리인 것이다.

아이들이 기독교교육으로 아름답게 자라면서 어느새 그 부모들도 감동을 받는다. 자기 아이들이 보고 배운 성경말씀의 생명력이 그 부모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나섬어린이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국의 복음과 기독교 문화를 세울 가장 소중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작은 아이들이며,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어느새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 민족을 품고 세계를 향해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

3. 사회적기업 나섬

1) 사회적기업 나섬의 설립배경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문화 이주자들을 선교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무척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 받은 하였다. 교회를 통한 후원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혔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기형적인 구조와 교회정치의 역학구조상 우리가 선교비 명목의 돈을 모금한다는 것은 언제나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그네들을 섬기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필요한 재정이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자처럼 버릴 수도,

그렇다고 붙잡을 수도 없는 민감한 것이었던 것이다. 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적 도구였지만 한편으론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문제였다.

사실 이 재정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특수목회라는 영역의 사역을 하는 거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거운 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딜레마 속에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게 다가왔다.

필자가 우리 나섬의 사역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다. 우연히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모르게 기도하며 연구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업으로의 인증을 받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었고, 마침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 나섬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에 도전한 것은 2009년 5월29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2개월만인 2009년 7월 27일,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우리 나섬공동체에서 하는 몇 가지 사역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말이 사회적기업 인증이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축해도 충분히 기쁘고 대단한 일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단체나 문화, 환경, 노인요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우리 나섬공동체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분야는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경우이다. 특히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거나 만들어내는 일은 드물고 생소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나섬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다문화와 사회적기업의 연계는 현재 다문화 사역을 하고있는 동역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다. 나섬의 사회적 기업은 나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문화 사역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대안이며 희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특수목회와 선교의 모델이 되고자 한다.

2) 사회적기업 나섬의 내용

(1) 양평다문화생태마을



나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기업의 인프라가 양평의 다문화생태마을이다. 지난 2009년 9월 15일에 1년여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오픈하였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후에 시작한 새로운 아이템이다.

나섬이 사회적기업을 만들면서 심화 강화하려는 것은 분명 다문화 사역이었다. 그러나 양평의 사회적기업이 단순한 다문화 체험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제한된 사람만이 이용하거나 그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와 함께 생태적이며 보다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내용을 확장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업이 지렁이와 표고버섯 그리고 블루베리였다.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하여 무척 만족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분명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 확신한다.

양평의 다문화생태마을은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한다. 다문화와 생태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캠프를 비롯하여 지렁이와 버섯체험은 물론 블루베리의 수확을 통한 수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다문화생태마을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체험객들을 통해, 아직 미흡한 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무척 흥미롭고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양평 다문화 생태 마을에는 다문화체험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져있다. 다문화와 생태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인 다문화와 생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붙여 놓고 보니 참으로 기막힌 조합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꿈은 사회적기업 나섬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새로운 창조적 대안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불투명한 선교사역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다. 이것이 길이라고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가르쳐 그 길로 이끌어 가고 싶은 것이다. 나섬의 사회적 기업이 가야할 길은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며 성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과 미래를 위한 충실한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커피사업-커피북(coffee福)



나섬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선교와 목회의 패러다임을 꿈꾸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더 필요한 기업형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다문화 이주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선교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섬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는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그대로 선교지에 복제하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선교와 비즈니스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BAM(Business As Mission) 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또 다른 BAM(Barista As Missionary)의 모델을 발견하였다. 바로 선교사가 바리스타이며, 바리스타가 곧 선교사가 되는 등식이다.

나섬의 사회적 기업이 커피 비즈니스를 통하여 뿌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이미 우리 사회적 기업은 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통하여 커피북(coffee福)이라는 이름을 기부받았다. 커피를 통한 선교비즈니스는 시작되었다. 벌써 바리스타 교육이 시작되었고, 컨테이너에 작은 카페도 만들었다. 원두

유통은 물론 공정무역 등 커피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양평의 다문화 생태마을에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천막카페도 만들어 놓았다.

"BAM(Business As Mission)을 위하여 BAM(Barista As Missionary)으로 간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고 무엇이랴?

(3) 나섬가게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개념의 가게이다. 나누고 섬기는 가게이기도 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다문화 이주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현재 나섬가게는 평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주일에는 우리 공동체를 찾는 이주민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연 2회 정도는 외국인근로자선교회와 함께 대규모의 바자회를 열기도 한다.

(4) 다문화이해교육



우리 공동체의 나섬다문화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이 국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다문화 교육은 이미 다문화사회를 맞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새로운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며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선 피부와 언어,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사고하며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 이해의 확산을 통하여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5) 노마드 공연단



‘노마드 공연단’은 ‘사회적기업 나섬’의 수익 구조의 한 축으로 기획되어 만들어 졌다. 다가온 미래로서의 다문화를, 공연을 통해 우리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수익도 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다. 6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수준급의 무대를 올릴 수 있게 된 노마드공연단은 우간다 형제와 필리핀 자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와 춤 등의 연습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 공연팀을 시작했을 때는, 무대에 공연을 올린다는 것이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땀 흘리며 노력하는 팀원들의 열정은 여러 악조건들을 모조리 녹여버렸다. 여기에 00은행 나눔재단의 후원을 얻어 공연에 필요한 악기와 장비를 구입하였고, 음악과 안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본격적인 훈련을 하자 팀원들의 보석과 같은 재능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4월의 일일찻집 공연, 5월의 커피문화축제에서의 공연으로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 ‘노마드 공연단’은 도서관을 순회하는 노래극에 도전장을 내었고, 더 큰 성과는 공연을 통해 각 팀원이 다문전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상품가치를 알아본 강원도 00 리조트 시설에서 7, 8월의 휴가 기간에 매 주말마다 ‘노마드’의 공연을 정례화 했고, 공연단은 리조트 측의 기대에 부응하는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사회적기업 나섬은 다문화사회로 발을 내디딘 한국사회에서 노마드공연단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4. 사회적기업 나섬의 비전

- 사회적기업을 넘어 선교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 나섬의 의미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이주자들과 교인들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그들은 거의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남모르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래서 일을 하여 재정적인 독립을 하기를 원한다.

결혼 이주여성이 친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주고 싶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아픔을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을까? 이주 여성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당당하게 친정 식구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바로 그런 다문화 이주자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다.

빵과 복음은 함께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이주자들을 선교하면서 나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빵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았다. 빵과 복음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소외와 가난과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빵의 문제는 복음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결혼을 위하여 찾아온 결혼 이민자의 경우,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일 수밖에 없다. 돈이 삶을 바꾸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한국에 찾아왔으며,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다.

돈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부터 편견과 차별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으며, 돈 때문에 눈물짓고 살아야 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가난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고,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나섬이 사회적 기업이 됨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작은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복음은 그 생명력이 없다. 그들에게 희망은 곧 삶이며 전부다. 희망은 그것 자체가 복음이며 만약 나섬의 사회적 기업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복음이다. 복음은 말씀이지만 동시에 삶이어야 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복음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복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섬은 말씀으로서의 복음과 삶으로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서의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활성화하며, 다문화 생태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다문화 이주자들이 직접 생산 유통할 수 있는 다문화 작업장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문화 축제를 대행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다문화 이주자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섬가게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된 것이다. 전혀 새로운 선교기업이 된 것이다.

나는 새로운 미래에서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목회와 선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고집하는 선교가 아니라 매우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전략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새로운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내 삶과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대안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 대안이 "BUSINESS AS MISSION(BAM)"임을 알았다. 비즈니스와 선교가 나누어 지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추구되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미래 목회와 선교는 비즈니스가 곧 선교이고, 선교가 곧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선교와 기업과 비즈니스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그것들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이다.

바울은 스스로 자비량의 선교사임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비즈니스 선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미 하나의 중요한 단서이며 모델이 된

것이다. 우리는 바울적 선교를 살아야 한다. 오늘날 지나치게 세상과 선교, 복음과 세상을 나누어 버린 현실이 아닐까? 삶과 선교가 나누어지고, 복음과 세상이 구별되는 것이 과연 성서적이며 기독교적인 것인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교회를 나눌 수 없다. 복음과 세상적 삶이 나누어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비즈니스와 선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런 신학적 바탕 위에서 나섬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선교적 기업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스스로 별에서 선교하고 소외의 자리에 사랑을 나눌 것이다.

한국교회의 종교권력과 돈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돈에 포로된 비주류는 더 이상 의미있는 비주류가 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향력있는 비주류가 되기 위하여 독립하려는 것이다. 그 모델을 만들어야 한국교회가 성숙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모델이 사회적 기업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선교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넘어 선교적 기업으로 간다. 미국의 세이버 공동체의 모델을 찾아 가는 것이다. 후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교공동체에서 자립적 구조를 갖춘 새로운 선교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민자 선교복지와 해외선교모델

- 남부전원교회의 다문화 사역을 중심으로 -

남부전원교회⁹⁾ 선교위원회

1. 들어가는 말

글로벌 시대, 전 세계적으로 일 년 이상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약 1억 9천 백 만여 명(2005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64억 7천만 명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에 비해 21%가 증가한 수치이다. 세계 각국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거센 물결이 ‘빈곤의 세계화’ 즉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갈수록 심화시키면서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는 이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개발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빈곤의 세계화 속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들의 이주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주의 여성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의 글로벌화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맞물려 세계는 바야흐로 “이주의 시대(The Age of Immigration)”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와 비교하면 다소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자의 대거 유입은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이주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⁰⁾ 2010년 6월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1,208,544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 약 4만

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3-1에 소재 (담임목사 박춘근)

10) 김이선·황정미·이진영,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11p 참조

9천여 명에 비해 20년 사이에 24배나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0년에는 외국인의 수가 약 25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¹¹⁾

또한 체류 외국인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 체류 유형이나 출신국가가 다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류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단순노무 분야 종사 외국인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영주자격자, 외국인투자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전체 체류외국인 중 방문취업 목적의 외국적동포가 297,756명(24.6%), 단순노무인력 215,646명(17.8%), 결혼이민자 136,556명(11.3%), 유학생 82,096명(6.8%), 전문인력 43,546명(3.6%), 영주자격자 17,515명(1.4%), 기업투자가 7,727명(0.6%)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의 출신국을 보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중국 47.7%, 미국 11.7%, 베트남 7.9%, 필리핀 3.9%, 태국 3.3%, 일본 3.2%, 몽골 2.5%, 기타 19.8%로 총197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다.¹²⁾

이처럼 다양화 되고 있는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거나 정체성의 혼란 등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인 사회비용 및 갈등이 증가될 우려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은 절실하다.¹³⁾ 한편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사회통합은 재한외국인의 증가와 다양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9년도 출산율은 1.15명으로 조상대상 국가 193개국중 최저수준이며¹⁴⁾, 총인구는 2018년에 4,93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되고, 급속한 고령화현상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도 2016년 3,619만 명(총 인구 중 73.4%)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될 전망이다.¹⁵⁾

국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자가 대한민국으로

11) 출처: 2006. 8. 법무부, 외국인정책 관련 환경변화 미래예측 보고서

12) 이상에서 언급된 통계는 관광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 등이 혼재되어 있어 재한외국인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13) 해외 각국의 경우 사회통합되지 않은 이민자와의 갈등해결은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2005년 이민자 폭동사태, 호주의 2005년 인종 간 폭력사태, 미국의 2007년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총기사건, 남아공의 2008년 인종 간 폭력사태 등 사회통합 실패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게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지만 각국의 사례는 간접경험이 될 수 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2008. 2. 2.)은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은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가 만연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에 대한 반감이 유색인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14) WHO(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통계 2008’ 참조

15) 한국재정학회 참조

귀화하거나 국적을 회복하는 자 보다 많은 만성적 인구 순유출국으로 인구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재한외국인 관련하여 무관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우리 국민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내부적인 사항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에 대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경제정책과 연계하고 있으며, 고용 없는 경제성장, 내수 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확보와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⁶⁾

세계 각 국가들은 지식기반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경쟁적으로 해외 우수인재의 유인을 촉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예외가 아니다.¹⁷⁾ 요컨대 재한외국인 증가 및 다양화는 단순히 사회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형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사회통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 남부전원교회의 다문화 사역 추진배경

이러한 때에 남부전원교회(담임목사 박춘근)는 세계를 향한 복음화(이주근로자)와 차세대 교회 교육을 통해 평택·오산지역 복음화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5년 산업연수 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필리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선교회가 효시가 되어 일찍이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중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향기가 나는 집(溫馨之家)’이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남부전원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역의 태동배경과 사역 현황,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관찰하여 정리한 해외선교와의

16) 외국인인 이민 유입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지 내국인의 일자리만 잠식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OECD의 ‘2007년 세계 이민 보고서’는 10년 사이에 스페인에 일자리가 700만개 증가하고 프랑스나 호주에서 일자리가 200만개 증가한 것은 외국인력이 유입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부족한 산업에서 일하며 또 다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17) 미국은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통합배정법(Omnibus Appropriation Act)을 통해, 캐나다는 2002년 新이민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독일은 해외 우수인재 도입을 위한 이민법제(Zuwanderungsgesetz)를 2004년에 확정, 2005년도에는 이를 발효한 바 있다. 홍콩은 2006년 6월부터 「우수인력유치이민프로그램(Qualified Immigrant Admission Scheme)」을 도입, 영국은 New Point Based System(2008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도입, 중국은 우수과학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인종·국적·비용 불문의 3원칙 수립하여 각각 시행하고 있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필리핀인 근로자 사역

남부전원교회는 1980년 10월 평택시 복창동에 설립되었으며, 1981년 서정동 성전을 건축한 한 후 다시 2001년 12월 지금 지산동으로 이전하였다. 평택(당시 송탄)지역은 K-55, K-6 등 미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주변 여건상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989년 당시 미공군 군인과 그 가족 및 군무원 등을 위해 영어예배(English Service)를 신설하여, 매 주일오후 2시에 정기적인 영어예배를 시작하였으며, 영어예배 사역은 점점 확대되어 미공군과 함께 하는 한미 연합예배, 미국인 성도와 함께 하는 찬양축제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인과의 자연스럽고 빈번한 접촉은 1990년대 중반 남부전원교회가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다문화 사역’을 추진하는데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수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속에 남부전원교회는 1995년 다문화 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필리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 미국인과 한국인이 참여했던 주일 오후 2시의 영어예배에 필리핀 근로자들이 초청되었으며, 영어예배후에는 30~60분정도 서로의 삶과 말씀을 나누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상 대부분 주일(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들의 소속 회사로 찾아가서 사내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사역이 전개되었다.

필리핀 근로자와의 언어적 소통을 위해서 미공군기지(K-55)에 근무하는 성도와 교회내 영어소통이 가능한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다문화 사역을 추진하는데 초기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필리핀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필리핀으로부터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전임 사역자를 초청하여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스태프 20여명이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필리핀 성도만을 위한 별도의 쉼터를 임대(88평)하여 쉼터, 교제, 상담, 예배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2)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역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사역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2001년 10월에 「원신즈씨아(溫響之家)」¹⁸⁾란 명칭으로 중국인

18) 원신즈씨아(溫響之家)란 의미는 “따뜻한 향기나 나는 집”이란 의미로 중국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단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몇몇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원신즈씨아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미 필리핀 근로자 사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문화 사역을 경험한 남부전원교회는 중국인 전담사역자를 초빙하는 등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사역을 추진하게 되었다.¹⁹⁾

또한 예배설교나 제직회 등에서 자연스런 논의를 과정을 거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국내의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하는 것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의 비전을 갖고 다문화 사역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3. 사역의 세부내용

〈표 3-1〉 사역의 주요내용

	디아스포라(필리핀)	원신즈씨아(중국)
사역시작	1996년	2001년
사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사역자 : 필리핀 목사(종교비자) - 협력사역자(Staff) : 평신도 및 대학부 청년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사역자 : 중국인 전도사 - Part-time사역자: 중국인 전도사(종교비자) - 협력사역자 (Staff) : 평신도 및 대학부 청년 20명
성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록 : 500여명 - 매주 예배 : 80여명(장소 : 서정동) - 리더(집사) : 10명(필리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록 : 3,500여명 - 매주 예배 : 100~150여명(장소 : 본당) - 리더(집사) : 10명(중국인)
소그룹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성경공부 그룹 : 2개 그룹 및 토요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성경공부 그룹 : 4개 그룹 및 토요모임 - 예수 생명 학교 (제자 훈련) - 새신자 훈련

다.

19) 이로인해 2001년 10월 중국인근로자 6명으로 시작한 사역은 2001년말 50여명이 모였으며, 2002년 2월에는 100여명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 이듬해에는 300여명이 모이는 등 양적인 팽창을 가져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산규모 (2010년 기준)	연간 5,000만원 - 필리핀 성도(자립도) : 65% - 선교회 스텝 등 후원자 : 15% - 교회보조금 : 20% - 재정자립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연간 7,000만원 - 중국인 성도(자립도) : 65% - 선교회 스텝 등 후원자 : 10% - 교회보조금 : 20% - 기타 : 5%
파송 및 신학교육	-	- 신학생 부부 해외유학 전담파송 - (국내) 신학교 전담지원 3명 - 중국 선교 파송 : 3명(베이징, 티벳, 푸지엔) - 중국현지 교회 개척 : 6곳 (사역자 신학교 교육 지원)
기 타	별도의 독립된 쉼터 운영 (서정동 소재 80여 평 건물 임차)	별도의 독립된 쉼터 운영 (서정동 소재 40여 평 건물 임차)

〈표 3-2〉 남부전원교회 중국인 다문화 사역의 주요내용

구분	분 야	주요 내용	비 고
쉼터 운영	- 긴급피난소, 상담, 국제전화사용, 양육 및 봉사 훈련, 교제와 친교		- 쉼터운영(공통)
영상 프로그램	전교인(필리핀인·중국인) 수련회		매년 7월 마지막 주간 (휴가기간 활용)
	한중 연합예배	- 간증, 찬양, 선교보고회, 사진 전시회, 중국인 영상 보고 등	연회(상반기)
	한중필 연합예배	- 간증, 찬양, 선교보고회, 사진 전시회, 중국인 영상 보고 등	연회(하반기)
	리더수련회	- 필리핀인 리더 수련회 - 중국성도 Key man 수련회	명절(추석, 구정)
	양육프로그램	- 단계별 성경공부	네비게이토, CCC 교재
	선교여행	- 각 성도가정 심방 및 귀국한 성도가정 방문 - 영상메세지 전달	- 연 1 ~ 2회 (청년부, 중고등부 참여하여 후세대 양성 프로그램으로 활용)
활동	춘절만회	- CCTV시청 및 전체영성수련회	- 춘절축제(1일), 전체수련회(1일)

	중추절 행사	- 관광(애버랜드, 서울투어, 선교유적지 방문 등)	- 연회
	성탄축제	- 중국성도 자체 축하 모임	- 연회
	음악축제	- 한중필 연합 음악회 (오케스트라, 성악 독창, 연주 등)	- 연회
	봄체육행사	- 어울림 행사(게임, 친교 등)	- 연회
	선교회보 제작	- 한·중판	- 연회(봄)
필요 채우기	인권상담	- 노동, 폭행, 사건사고 등	- 매주(교회), 매일(쉼터)
	의료상담	- 의료 자원봉사단체와 무료진료사업 협력 및 지역병원 지원 (15개 의료과) - 민간의료보험사업과 연계협력	- 격월 - 민간의료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등록
	해외송금	- 본인 이름 송금 대행 (은행과 연계하여 월회 교회출장)	- 매주 ※ 본인 이름 통장 만들기
	자국 공관방문지원	- 정규 차량지원	
	컴퓨터 인터넷 사용지원		
동아리 활동	축구 동아리		
	기타(악기) 동아리		
	피아노 학습반		
어학 강좌	한국어강좌	- 2개 반 편성	
	중국어강좌	- 한국인 성도를 위한 강좌 (어린이반, 성인반 등)	

4. 다문화 사역과 해외선교 모델(원썬즈씨아를 중심으로)

남부전원교회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의 프로세스와 해외선교 연계모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남부전원교회가 초기부터 이러한 모델을 의도하고 사역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니었으나,

과거 15년을 돌아보며 모형화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남부전원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함이며, 앞으로 다문화 사역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사역의 핵심 프로세스

중국 선교회의 사역을 정의하면, 한국에 들어 와 있는 중국인(현재는 이주 근로자)이 주 대상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꾼으로 양성하여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 본토 중국 땅에서 가족들과 이웃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사역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정립했던 사역의 비전은 “중국 33개성에 33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사역이 처음 시작된 2001년에 세워진 이 비전은 지금까지도 이를 위해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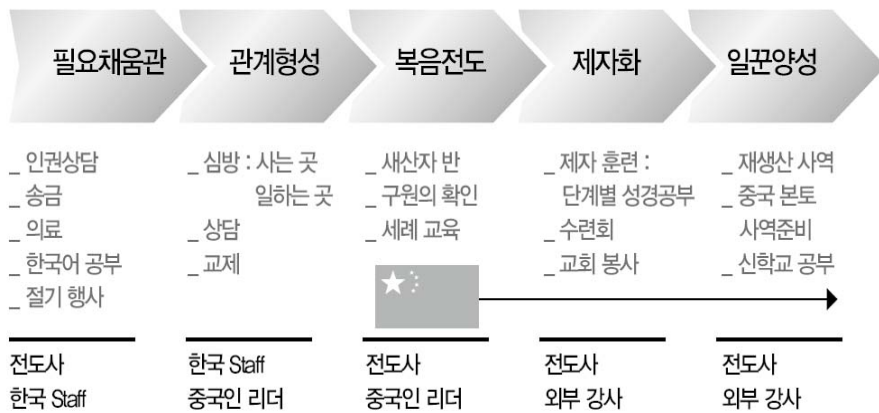
사역의 정의와 비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역의 특징을 보면, 첫째 사역의 활동 무대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 사역의 범위가 전도사역에 한정되지 않고, 또 다른 복음 전도자, 일꾼을 양성하는 데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다.(딤후 2장 2절, 이사야59장 21절²⁰⁾) 즉 사역의 활동 무대가 한국의 들어와 있는 중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한국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으로까지 확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사역을 시작하고 2003년부터 단기 중국선교여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선교여행은 한국에서 교제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의 중국 현지가족을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을 되었다. 원썩스끼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형제나 자매의 가족을 방문함으로써 상호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교회와 예수님, 복음을 미리 전함으로써 한국의 중국인 근로자 성도들이 중국에 귀국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확보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단기 중국 선교여행은 2007년까지 매년 1회 실시되다가 2008년부터는 연 2~3회 실시되고 있다. 중국의 광대한 지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횡수를 증대시킨 것이다.

두 번째 사역의 특징은 사역의 범위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에 머물지 않고 제자훈련과 일꾼양성을 통하여 중국 본토에 하나의 복음전도 사역자로 파송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각 지역에 현지인

20) 이사야 59: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역자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2010년 현재 이미 베이징과 쓰촨 청두에 교회를 세웠고, 푸지엔, 후베이 등에도 교회를 돕는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에 세운 사역의 비전이 하나씩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한국에서 야간 신학을 공부하는 형제, 말레이시아에서 전문 사역을 준비하며 신학 공부를 하는 부부, 중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신학공부를 하는 자매들 등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다.

■ 사역의 핵심 프로세스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람, 잘 키워 다시 보낸다.”



사역의 마지막 특징은 이주 근로자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상호간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필요 채움이란 외국인 근로자로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을 선교회에서 돕는 것이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인권 상담, 월급을 본인이름으로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 의료보험 및 진료, 한국어 공부 등이 필요 채움사역의 주요한 내용이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선교회가 도우면서, 선교회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다.

원썬즈찌아가 추구하는 필요 채움사역의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대외적 협력이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협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권상담은 외부 노무사, 변호사 등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의료는 의료보험선교회, 진료봉사 선교회, 보건소, 관내 개인병원 등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필요 채움 사역의 전문성을 높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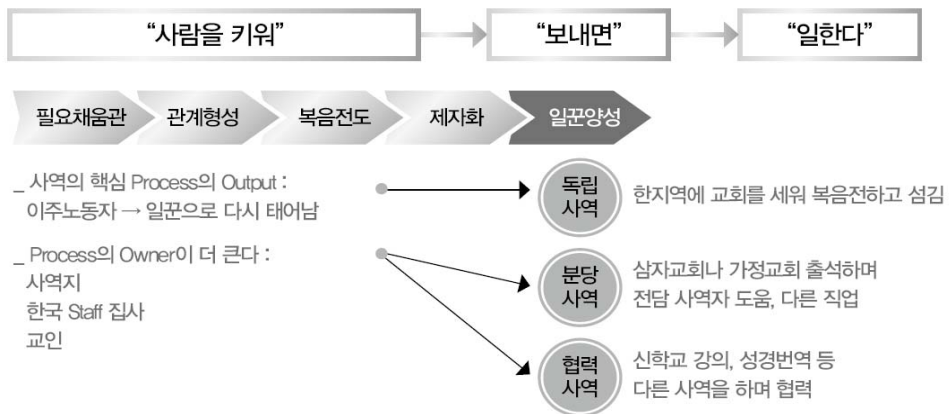
동시에 연속성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사역의 핵심 프로세스가 가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주 길다. 한 사람이 일꾼으로 양성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역은 장기간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사역을 이끄는 전문 사역자 뿐 아니라, 이 사역에 헌신하는 평신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헌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해외선교와의 연계모델

한국에서의 사역을 통해 중국으로 다시 보낸 일꾼들이 중국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사역을 실시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독립 사역을 한다. 실제 베이징에 2004년에 교회를 세워 독립적인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베이징 교회는 2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2개의 지교회(개척교회)가 있고, 1개의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 해외 선교 모델



일꾼으로 양성되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형제자매들이 감당하는 부분 중 다른 하나는 기존의 교회(삼자교회나 가정교회)를 돕는 사역이다. 기존 교회에는 이미 기존 사역자가 있고 이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푸지엔 푸저우에 한 형제는 9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 삼자교회 사역을 돕는데 지교회 중 6개 지교회에서 평일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이를 분담사역, 파트타임사역이라 부른다.) 마지막 해외선교 모델은 협력사역

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거나 성경번역 사역을 하면서 한국의 사역과 협력하는 것이다. 귀국하는 형제자매들이 각 지역에서 재정착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돕거나 독립사역, 분담 사역의 길을 열어 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현재 쓰촨 청두의 한 목회자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5. 당면과제와 문제해결 및 다문화 사역의 제언

1) 다문화 사역의 당면과제와 해결

① 다문화 사역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또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회적인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기성교회의 경우 다문화 사역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새로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내에 들어올 때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며, 외국인 성도의 수가 증가하면서 불편해 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남부전원교회에서도 중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교회내 주변이나 식당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외국인들에게서 나는 독특한 체취(냄새)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교역자와 스태프진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해 올 수 있었다.

② 의사소통의 문제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의 언어를 얼마나 구사하느냐가 이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길 정도로 남부전원교회의 이주 근로자 스태프진은 자발적으로 영어과 따갈로그어,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두 단어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두 문장씩 의사소통이 확대되어 나갈 때 외국인 성도들은 마음문을 열기 시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③ 문화적 차이

다문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미리 사전에 연구하고 학습하여 상대를 만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부전원교회에서는 필리핀인이나

중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모임을 갖거나 상대국가의 문화에 대한 학습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타문화 선교에 대한 다양한 성경공부를 통해서 소통과 이해를 높여나간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보인다.

④ 복지와 선교

다문화 사역의 프로그램은 크게 선교와 복지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교의 목적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지만,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복지적 관점이다. 복지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지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병고침의 사역에서부터 죄사함과 세례 등 복음증거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먼저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들을 편하게 상담해 주고 설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것, 가족들과 국제전화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송금을 도와주는 것,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서비스, 한국어 공부의 학습제공, 한국문화이해, 밀린 임금 받아주기 등을 전개하면서 점진적으로 복음까지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의 경우 처음부터 선교라는 목적으로 접근할 때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다문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톨릭이나 이슬람교 불교나 토속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전하는 선교는 매우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단기선교여행을 통한 가정방문

남부전원교회는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인과 중국인 성도들의 가족을 방문하는 심방사역을 하고 있다. 2003년 8월부터 시작한 심방사역은 필리핀의 경우는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회 8-10여 가정, 중국의 경우는 처음에는 연 1회 방문을 하다가 최근에는 연 4-5회 수시로 심방을 하고 있다. 단기 여행팀은 출국 전에 중국인 및 필리핀 성도의 근황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고 문구류나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여 현지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그곳에 가서는 가족들의 근황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와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⑥ 사역자 선발

국내거주 외국인 선교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적격한 사람이 없어서 업무를 못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전문인력이란 바로 평신도들이다. 1996년 남부전원교회에서 이주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만 하여도 전체 교인수 2백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중 이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할 사람은 많지 않았으나, 사역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남부전원교회의 특징은 필리핀인이나 중국인 사역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은 부부를 중심으로 스태프(Staff)로 임명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청년들이 보조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⑦ 초기 예산부담의 어려움

다문화 사역을 추진할 때, 적격한 사역자의 발굴과 함께 각 교회에서 어려워하는 요소가 바로 예산부분이다. 남부전원교회에서는 1996년 다문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거나, 큰 예산을 한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등 반대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역이 정착되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디아스포라는 물론 원스핀즈피아 모두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서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규모도 6000~7000만원에 이를 정도이다.

2) 다문화 사역을 위한 제언

① 이민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목회 패러다임 전환

국가, 사회 구성원이 변하고 있듯이 지역 교회의 구성원도 변하고 있다. 먼저 목회의 대상이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민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교와 교육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의 실재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21세기의 이민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세계관과 문화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섬세한 준비와 프로그램 및 매뉴얼 마련 필요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이민자에 대한 교회적 이해와 서비스 개발은 중요하다. 교회 사역이 단순히 이민자를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균형있게 성장하고, 나아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는 복음전도와 교육(양육)과 사회봉사와 교제를 모두 포함한다. 이민자 개인의 영혼구원과 사회개혁과 봉사 등 분야에 균형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의 매뉴얼 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다문화적인 시대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도록 성도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이민다문화 시대의 효과적 선교 전략마련

예수님께서서는 12제자를 통해서 훗날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을 전망하셨다. 어떠한 목적으로든 이 땅에 찾아 온 외국인근로자,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 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출신국가에 두고 온 자신의 가족과 가정에게 복음의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이민자에 대해 섬세한 목회적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는 이민자들이 주체가 되는 역동성 있는 선교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 선교사를 초청하든, 이민자들이 주체가 되어 나서든 교회는 이민자를 통하여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은 물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선교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신분상 매우 중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는 다른 체류 외국인과는 달리 이 땅에 정주하기 위해서 온 자라는 사실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반면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에 영주 또는 귀화할 목적을 갖고 있는 이민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그들의 출신국가에 항구적으로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음의 수평적 파급효과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민여성은 특성상 정주형 이민자로서 출신 국가의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결혼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선교사역의 복음의 씨앗으로서 타문화 선교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교전략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의 후세대 자녀의 어머니로서 세대를 이어가는 매개가 되어 복음의 수직적(세대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층임을 생각해야 한다. 한 개인의 구원이 그 가정의 구원과 연결될 때, 이는 가히 폭발적임을 생각할 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및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④ 이민자 지원 교회 및 단체간 협력 강화

국내의 이민자 관련 단체의 대부분은 작은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민자단체 대부분이 경제적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교인들 대부분이 이민자 계층이어서 상대적으로 교회 재정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작지만 큰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나 선교기관이다. 다국어 예배 및 전도는 물론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한 쉼터, 한국 사회 적응 한국어, 문화 교육, 의료지원, 지역사회 갈등해소 등에 적극적이다.

이들 교회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문화 목회 및 선교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자 선교는 다문화 사회의 특성에 맞는 섬김과 나눔, 사랑과 정의의 실현

및 사회학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합과 협력선교 등의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간 협력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선교사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문화 목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다문화 사역 연합체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6. 맺음말

국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에서도 이민자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 구성원이 변화하고 있듯이 교회의 구성원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목회의 대상이 국민국가(Nation State)시대의 국민 중심에서 이민의 시대에 이 땅의 낮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최근 많은 교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않게 볼 수 있으나, 이제 교회의 관심을 우리나라에 정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우리나라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순혈주의, 가부장중심의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해 왔으나,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서로간의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대처할 것인가가 새로운 정책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인종, 문화, 언어 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그 다양성을 발전적, 생산적 사회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아랍계 청년들에 의한 소요사태와 같이 인종 및 민족, 종교, 출신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들을 다수자들이 배제하고 차별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은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 정책은 이제 단순히 노동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벗어나, 결혼, 가족, 귀화, 교육, 의료, 복지, 정체성, 나아가 사회통합이라는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선교와 목회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혼, 귀화, 출생 등의 방식으로 한국인이

된 외국인들이 한국 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독교교육 및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것뿐만 아니라 교인의 의식을 선진화하는 등 다문화 포용과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급진전에 따른 지역 교회의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민자의 모습을 관찰하면 매우 흥미롭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면서 이미 이민자의 삶을 사셨으며, 우리 자신도 나그네로서 이 땅의 이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민자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향 갈대아 우르(Ur)가 멸망할 무렵인 BC1950년경 우르에서 950km정도 떨어진 하란으로 이주하면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창11:31-32)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창12:1) 이주의 여정을 떠난다.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이주민이었으며, 특히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강제 인신매매를 당해 애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이다.²¹⁾ 모세도 애굽의 심장부에서 자라, 청년시절에 미디안 땅으로 이주하게 된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다. 역시 이민자의 신분으로 국제결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약시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민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소명은 묵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행11:27)

우리 사회는 급격히 이민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민다문화로의 변화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 다문화 사회를 위한 지역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우리 사회 이민자와 다문화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교회 자체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개방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인종과 피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민자와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역은 백화점의 진열장에 놓여있는 상품이 아니며, 교회의 선택형 과제가 아니다. 또한 지역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화려한 장식물은 더더욱 아니다. 이민자에 대한 다문화

21)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인의 땅에서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창세기 40: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역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회의 자연스런 응답이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성교회 체제 속에서 새롭게 이민자 대상의 다문화 사역을 시도할 때 다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회의 체제나 문화, 관습 등 종종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는 타문화선교에 있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는 복음의 핵심이자, 교회 존재의 본질적 이유이다.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목회 패러다임과 다문화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포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성도의 영적시야와 안목이 넓어지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 갈라디아서 3장 28절 -

다문화사회의 국내 이주아동 사례

코시안의집 김 영 임 원장

I. 다문화가정 아동 관련법과 정책

1. 다문화가정 아동 관련 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지원법」이 2008년 3월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0조 아동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사 광역사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합법적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 등의 처우개선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 관련 국제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과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7조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제9조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0조2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아동의 의견표명 기회)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라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제28조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고등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 문명에 대한 존중,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

제30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12월 18일 유엔에서 채택되었으며, 2003년 7월부터 발효되었는데 한국은 미가입 국가이다.

제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 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특히 현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현지의 학교제도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1조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4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내 다문화가족 아동 교육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제정, 2005년 전문개정, 2007년과 2008년 부분 개정된 법이다. 다문화가족과 직접 관련된 조항으로는 2008년 12월에 개정된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의 제26조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3조 (보육 이념)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는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주아동들의 교육의 기회를 늘렸다.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2006. 6. 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2008. 2. 22]

②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7, 2005. 9. 29] [전문개정 1997. 2. 27]

2.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 추진 현황은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정책 총괄은 법무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총괄하며,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교육지원을 시행하며, 문화관광부는 다문화성 제고와 한국어교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내 3개실(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임신·출산에 따른 방문 지원 서비스와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는 부모의 자녀능력배양을 위해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과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부모와 자녀 교육 등이 실시되어지고 있으며, 셋째는 영유아보육교육의 강화를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검토되어지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 아이돌보미 사업 강화와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는 교육기 아동을 위한 다문화아동 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다섯째는 빈곤위기 아동청소년과 요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개소에 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초중등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09~'12까지 국가와 지방이 7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주기별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결혼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당사자 인권보호 -결혼이민예정자 사전정보제공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자녀양육기	다문화 아동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임산출산 지원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부모·자녀 건강관리
자녀교육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아동 언어학습정서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빈곤위기아동·청소년 지원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가족역량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연계 강화
가족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다문화가족 이동지원 사업〉

추진과제	주요내용(추진일정)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2008~20011)
	취학후 한국어 등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2009~2012)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2009~2012)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가족단위 한국어 정보화교육 강화(2008~2012)
	다문화가정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책자 발간보급 (2009~2010)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2009~2012)
	자원봉사 통역도우미(2010~2012)
다문화교육기반 구축	지도교사 및 관리직 교원연수 강화(2008~2012)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운영(2009~2012)
	교대 등에 다문화교육강좌 개설 지원(2009~2010)
	다문화요소를 반영한 교과서 집필 및 교육자료 개발보 급(2010~2012)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학교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2009~2012)
	다문화이해 촉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보급(2009~2012)
	다문화교육 체험공모전 실시(2009~2012)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II. 국내이주아동의 사례

1. 이주가정 자녀

이주가정 자녀들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주가정 자녀들은 부모가 한국에 입국 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와 본국에서 출생 후 부모를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들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과 동일한 외국인 아동이며, 본국으로부터 이주한 아동들도 외국인 아동이다. 아동들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체류자격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족동반을 금지하는 국내 고용관련 법규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 아동들은 제3자를 통하거나 단기방문의 형식으로 입국하여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채 미등록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모가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아동들도 미등록으로 남아있다. 최근 증가하는 유학생의 가족동반은 이주노동자에 비해 입국이 유연하여서 아동들의 이주나 출생 시에 모두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있다.

이주가정 자녀들은 한국생활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양육, 교육, 사회적 보호와 체류, 사회복지권리가 제한적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가정의 아동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법적·사회적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가정 자녀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사례1) 너희 집이 어디니(몽골 이주가정 자녀/000/15세)

동생과 학교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000우체국 앞을 지나가는데 한국 아저씨 두 명이 우리를 불러 세웠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서 몽골사람이고 대답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또 물어봐서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대답하기 싫은 데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계시냐고 아저씨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겁도 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어른들이 말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 인 것 같았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너무 가슴이 떨렸다. 아버지가 비자가 없어서 집에 계시는데 아저씨들이 따라와서 아버지를 데려갈까 봐 무서웠다. 아저씨들은 다른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우리더러 그냥 가라고 해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집을 아저씨들이 따라 올까봐 한참 돌아서 갔다.

이주가정 아동들의 가정환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이다. 부모들은 본국을 떠나서 이주한 이주민으로 한국사회에는 가족과 친구, 동료집단을 포함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자원과 지지기반이 빈약하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주가정 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양육에 있어 충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사례2) 문 잠그고 가요(몽골 이주가정 어머니/00/34세)

남편은 몽골에 있고, 나는 5살 된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요. 내가 일을 하러 가려면 아이를 누군가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너무 비싸요. 어린이집 시간도 일찍 끝나서 잔업이 있는 날은 큰일이에요. 요즘 일이 없는 날이 많아서 주로 아이와 집에 있는데 일을 하러가는 날은 친구가 하는 식당에도 맡기고, 그것도 안 되면 방에다 먹을 것을 채려놓고, 텔레비전을 켜주고 문을 잠그고 일하러가요. 마음이 불안해서 아이한테 몇 번씩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지만 일하는 내내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 살 수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국민건강보험²²⁾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은 병원의 문턱이 높다. 한시적 체류 대상이거나 미등록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체류자격이 있는 가입대상자여도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가입을 포기하는 이주가정도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이주가정 자녀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건강 성장을 위협받기 쉽다.

사례3) 베트남 아기 0의 심장병 수술(베트남 이주가정/1세)

0은 한국에서 태어난 베트남이주가정의 자녀로 4개월 된 여아이다. 0의 부모는 모두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이다. 0은 안산에서 태어났으며, 심장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생후 3주 때 BCG 접종을 하러 인근 병원에 갔을 때였다. 소아과에서 좀 더 큰 진료기관으로 가서 진찰 받을 것을 권유받은 0의 부모는 00병원 소아과를 찾아갔다. 소아과와 흉부외과 진료를 통해 수술을 권유받은 0의 부모는 병원에서 초기에 이천만원이라는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집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다시 병원의 입원허가 전화를 받고 아기를 입원시켜 수술을 받게 하였다. 수술비는 모금으로 해결되었으나 계속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부모는 0을 베트남으로 보냈다.

22)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5.7.13>

미취학 아동들의 부모는 경제적 활동과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만 외국인 아동들에게 있어 보육시설 이용의 문턱이 높다. 생활수준에 따른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육비의 개인 부담감이 크고, 보육시설에서도 이주가정과 자녀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동들을 보육하는데 있어 언어 및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례4) 보육비가 너무 비싸요(파키스탄 이주가정 어머니/ 000/29세)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나는 신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공장에 다니는데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방학이라서 내가 돌보지만 다시 학교가 시작되면 아기를 누가 돌봐야 할 지 모르겠어요. 집 근처의 어린이집에 물어보니까 아이가 아직 일 년도 안 돼서 보육비도 많이 내야 한테요. 분유와 기저귀도 가져가야 되고, 우리는 월세방에 살고 있고, 남편의 일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걱정이예요. 또 나와 남편은 한국말을 잘 몰라서 선생님들과 대화가 어려워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도 힘들어요.

취학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있어 한국어 습득 정도에 따라서 적응 정도가 다르다.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이주가정 자녀들은 한국어 구사가 뛰어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 학교생활적응이 빠르나, 취학연령에 이주한 아동들은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기초부터 배우고, 낯선 교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과 교우사귀기 등 한국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과제를 갖는다. 이주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였다는 것은 개인적인 학습능력과 적응력이 빠른 탓도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이 이들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례5) 학교가기 싫어요(몽골 이주가정 자녀/00/16세)

학교에 가면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 몽골에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것과는 많이 다르고 한자와 도덕, 사회 같은 과목은 처음 배운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괴롭히면 화가 난다. 내 짝의 옆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면 와서 나에게 우유팩을 던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괜히 건드린다. 왜 그러냐고 너희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화도 내고, 싸우고도 싶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 참는다. 학교가기가 싫다.

2.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이주가정의 가족관계 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부나 모가 이주민으로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국제결혼 중개혼의 비율이 높아서 상대 배우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부부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가족해체 등의 심각한 갈등에 처하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은 초혼가족이 대부분이지만 재혼가족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해체로 인한 이혼가족, 별거가족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이주가정 자녀들과는 달리 재혼하여 이주한 자녀²³⁾을 제외하고는 출생 시부터 한국국적을 갖기에 성장과정에 있어 의료나 복지, 교육 등의 권리에 있어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출생 시부터 산후도우미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일반보육시설에서 자녀를 보육하거나 아동양육도우미를 배치 받기도 한다. 또한 자녀의 교육은 입학과 전학, 진학 등에 있어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으며, 기업이나 학교의 사회공헌사업에 의한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양육환경이 풍부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빈곤가정의 일부 자녀들만이 해당됨으로써 전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경제적인 포함한 다양한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23) 재혼한 가정의 이주 자녀들도 국적법에 의거해 특별귀화나 수반취득을 통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국적법 일부개정 2008.03.14 법률8892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소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를 밝히기 꺼려하는 자녀들도 있다.

사례6) 나를 소개합니다(방글라데시 국제결혼가정 자녀/000/14세)

나는 00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의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나의 아빠는 외국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얼굴은 눈이 크고, 눈썹도 아주 길고, 코도 오뎅하고, 입술도 예쁘고, 얼굴은 작습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습니다. 학교친구들은 내가 얼굴색이 검다고 ‘알리’ 라고 부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나는 아이들이 놀리면 ”하지 마!” 하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나를 놀립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놀리는 친구들을 때리고 싶지만 참습니다. 똑 같은 사람을 놀리는 나쁜 아이들도 있지만 나랑 친하게 지내는 좋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는 발야구와 컴퓨터 게임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와 육개장, 라면, 된장찌개, 고등어 이지만 외국음식도 잘 먹습니다.

나는 크면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7) 이름을 바꾼 이유(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어머니/000/37세)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웬티 남 프엉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적을 따면서 저는 000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아이들과 같은 성인 0씨로 하고 싶었는데 법원에서 같은 성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0씨로 정했습니다. 이름도 혼자 생각해서 00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예쁘다고 칭찬해서 기분은 좋지만 처음에는 남들이 이름을 부르면 약간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학교에 서류를 낼 때 제 이름을 웬티 남 프엉 이라고 쓰면 너무 외국사람 같아서, 아이들이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거나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봐서 힘들어할까봐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 책임은 대부분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 이주민 배우자를 둔 한국인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있어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경험과 정보, 지지집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주 여성 어머니들을 자녀양육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과 정보 부재, 지지집단 빈약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 어머니나 이주여성 어머니 모두가 부부 공동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부장적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양육은 어머니의 몫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미취학 자녀를 둔 이주 여성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주여성 자신도 한국사회적응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자녀들의 언어발달 부분이다. 가정 내에서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자녀들이 이주 여성인 어머니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습을 돕는데 있어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을 만난다.

사례8)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키우면서(베트남 국제결혼가정/000/35세)

저와 같이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은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가져 오는 가정통신문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있고 단어가 어려워서 이것을 결혼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아이들의 준비물을 잘 챙겨 주지 못하거나 학교 행사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면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 밖에도 한국의 역사, 사회, 과학처럼 제 자신이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베트남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일반 빈곤가정 자녀들이 갖는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로 나타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아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생활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으로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학력 중시 풍토와 학력에 따른 직업선택의 기회와 임금차이, 결혼, 사회관계 등 자녀의 일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이주민으로 겪는 한국사회의 경험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사례9) 다른 곳에서 교육시키고 싶어요(방글라데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000/36세)

아이들의 아빠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아이들도 아빠를 닮아서 외모가 외국인이에요. 서울에 가려고 아이들과 전철을 탔는데 앞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분이 자꾸 우리 아이들을 걱정스럽다는 듯이 쳐다봐요. 심지어는 혀를 끝끝 차면서 어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나서 가만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쳐다보는 눈초리도 신경 쓰이고, 학교나 교회에 보내도 혹시나 외국인 이라고 놀림 받지 않을까, 커서도 외국인이라고 따돌림 받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내가 걱정하면 아이들 아빠는 캐나다에 가서 살든지 어디 다른 외국에 가서 살자고 하네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다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갖는 정체성과 사회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에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인 부모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원하기도 한다. 초기 국제결혼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다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데 특히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이주민 부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모국방문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며 모국의 가족들과도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례10) 중국어가 늘었어요(중국 국제결혼가정 어머니/00/34세)

저는 한국인남자와 결혼했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한족 출신이지만 한국어 실력이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와는 주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중국어를 몰랐지요. 몇 년 전 중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일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중국어를 조금씩 알려주어서 기본적인 말은 할 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일하느라고 아이를 가르칠 시간이 없었고, 아이의 중국어는 더 이상 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하려고 방학 때 중국의 친정으로 보냈어요. 두 달 정도 있다 온 아이는 중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지금도 꾸준하게 배우고 있어요. 저는 아이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워서 중국의 친척들과도 잘 지내기를 바라요.

국제결혼 부부들은 개인 성격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언어와 문화의 장벽, 가정폭력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이혼하고 있다. 이혼은 부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정서적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을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담당함으로써 갖는 문제도 심각하다. 결혼 이주여성 어머니들은 이혼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며, 홀로 자녀의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육체적인 부담감으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혼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지거나 일시적으로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다.

사례11) 할머니를 따라 갔어요(필리핀 국제결혼가정 아버지/00/30세)

아내는 한국인으로 친구소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내와 저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고, 생각도 많이 달랐어요. 아내는 이혼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는 집을 나갔고, 아이는 맡길 곳이 없어서 아내의 어머니에게 잠시 부탁했어요. 장모님은 빨리 아이를 데려가라고 매일 독촉하셨고, 저는 000센터의 소개로 24시간 놀이방에 아이를 보냈어요. 이곳도 주말에는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고 해서 집이 없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에서 주말을 보냈어요. 아내와 이혼이 마무리 되고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되었지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 왔어요. 어머니는 제 친구 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보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 한 달 만에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아이가 보고 싶지만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요. 월급을 타면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필리핀으로 송금하지요. 아이와 함께 살 날 만을 기다려요.

사례12) 갈 곳이 없어요(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어머니/0000/34세)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남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나에게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술을 먹으면 때리기도 해요.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나온 던 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했다고 시아버지랑 함께 나를 때렸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00에 사는 친구 집으로 도망 나왔어요. 국적을 신청해서 조금 있으면 국적도 나온다지만 나는 필요 없어요. 아이랑 둘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친구도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내가 일 해야 하는데 잠 잘 곳도 없지만 아이가 어려서 맡길 곳도 없어요. 만약에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면 베트남에 있는 시골집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데 부모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 것 같아 걱정이예요.